



2016. 12.

#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2016. 12.

#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연구책임자 \_ 오 경 석

전임연구원 \_ 이 경 속



2016. 12.

#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 모니터링 보고서

펴낸이\_ 오경석

엮은이\_ 이경숙

펴낸날\_ 2016. 12.

펴낸곳\_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번 (초지동 667-2) 4층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전화\_ 031\_492\_9347

전송\_ 031\_492\_9349

누리집\_ [www.gmhr.or.kr](http://www.gmhr.or.kr)

꾸미고 짚음\_윤기희 (070.7716.832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 이 책의 독창적인 내용을 허가 없이 마음대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과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개발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 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정책개발과정에서 외국인 주민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 외국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
- 인권 상담과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방안 연구

## < 차례 >

I. 모니터링 개요 .....	11
1. 목적과 필요성 .....	12
2. 관련 연구와 본 조사의 의의 .....	16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19
II. 모니터링 내용 .....	21
1. 전문가 자문 .....	22
2. 모니터링 조사지 개발 .....	24
3. 모니터링 내용과 정책 제언 .....	27
III. 모니터링 추진 일정 및 방법 .....	41
1. 모니터링 추진 일정 .....	42
2. 모니터링 방법 .....	43
IV. 모니터링 결과 .....	49
1. 개요 .....	50
2. 차별 범주별 사례 .....	57
3. 차별 장소별 사례 .....	63
4. 차별 행태별 사례 .....	87
V. 시사점과 정책 제언 .....	113
1. 요약과 시사점 .....	114
2. 정책제언 .....	117
참고문헌 .....	123
모니터지 .....	127

## 〈 표 차례 〉

<표I-1> 경기도 외국인 주민 차별 요소에 대한 요인 분석 .....	14
<표I-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 사유별 이주민 상담 현황 .....	15
<표II-1> 인종차별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내용 .....	22
<표II-2> 모니터링 범주와 항목 .....	24
<표II-3> 범주별 차별 사례 예시 .....	25
<표II-4> 차별 범주별 사례 현황 .....	28
<표II-5> 차별 장소별 사례 현황 .....	29
<표II-6> 차별 행태별 사례 현황 .....	30
<표II-7> 인종차별 전체 사례 분류표 .....	31
<표III-1> 2016 인종차별 모니터링 추진 일정 .....	42
<표III-2> 2016 인종차별 모니터링 요원 인적사항 .....	44
<표III-3> 모니터링 요원들과의 간담회 현황 .....	45
<표III-4> 모니터링에 협조해 준 현장 기관 현황 .....	47
<표III-5> 모니터링 지원 현장 기관의 사후 평가 .....	48
<표IV-1> 사례 현황 .....	53

## 〈 그림 차례 〉

<그림I-1> 2011~2015년 다문화수용성지수의 구성요소별 비교 .....	12
<그림IV-1> 차별 범주별 사례 현황 .....	50
<그림IV-2> 차별 장소별 사례 현황 .....	51
<그림IV-3> 차별 행태별 사례 현황 .....	51

## < 사례 차례 >

사례1)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한국인이 아니죠? .....	57
사례2)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앉으세요 .....	58
사례3) 일본인과 동양인은 달라요 .....	59
사례4) 엄마가 일본사람이면 너도 ‘쪽바리’ .....	59
사례5) 한국인 아니면 해외 프로모션 갈 수 없어요 .....	60
사례6)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	60
사례7) 무슬림, 나쁜 사람 아니에요 .....	61
사례8) 한국 것이 최고야 .....	62
사례9) 나는 가족 아닌가요? .....	63
사례10) 베트남은 못 사는 나라니까 돈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	64
사례11) 엄마 나라 말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	65
사례12) 중국인과는 같이 안 놀아 .....	65
사례13) 다문화 가정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친구들은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	66
사례14) 교수님 왈, 아프리카 놈들은 모두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해 .....	66
사례15) ‘다문화가족’,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	67
사례16)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 .....	68
사례17) 묻지 마 폭행,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	68
사례18) 한국인은 가면 안 되는 ‘다문화’ 축제 .....	69
사례19) 코리아! 장사 노! 너희 나라 가! .....	70
사례20) 모국이 좋아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좋아요? .....	71
사례21) 외모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봐요, 우리 말 할 줄 알아요? ....	72
사례22) 외국인 피의자만 신상 공개 .....	73
사례23) 맥락 없이 결과만 보도되면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	73
사례24) 외국인 환자는 왜 푸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	74
사례25) 한국어 되는 사람 데리고 와! .....	75
사례26) 똑같은 병원비 냈거든요, 진료 똑바로 해주세요! .....	76



사례27) 외국인에게는 물건 팔지 않아요 .....	77
사례28) 반말, 모욕, 바가지, 손님이 왕 맞나요? .....	78
사례29) 사우나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예요 .....	79
사례30) 나는 밥 먹고 할 일 없어 주제 파악 못하고 가지가지 하는 외국인 국적 취득 희망자가 아닙니다. ....	80
사례31) 나는 도망가려고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	81
사례32) 나는 일본 국가 대표 선수가 아니예요 .....	81
사례33) 애국심 감별은 축구 응원으로? .....	82
사례34) 우간다에서 왔다고 면허위조범은 아니죠 .....	82
사례35) 경찰관님, 규칙은 공정해야죠 .....	83
사례36) 한국이 위험해 .....	84
사례37) 아프리카 사람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	84
사례38) 한국 국적을 취득했나요? 그래도 당신은 외국인이에요 .....	85
사례39) 외국인이 한국에 왔으니 그냥 말 잘 들어 .....	86
사례40) ‘원숭이’랑 같이 잘 수 없어 .....	86
사례41) 선생님, 저를 도대체 왜 부르신 건가요? .....	87
사례42) 한글 이름, 꼭 있어야 하나요? .....	88
사례43)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전부도 아닙니다. ....	89
사례44) 돈만 받고 도망간다면요? 그렇지요? .....	89
사례45) 이름 안 쓰면 다 한글 모르는 건가요? .....	90
사례46) 다 알아듣습니다, 말조심 하세요 .....	91
사례47) 당신은 돈 받고 결혼했나요? .....	92
사례48) 물을 흐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92
사례49) 여기 물건은 비싸서 당신 같은 외국인은 살 수 없어요. ....	93
사례50) 외국인들은 다들 이런 식, 내려 .....	93
사례51)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야,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지 .....	94
사례52) 실력보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 사람인가 .....	94
사례53) 중국말 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해야 하나요? .....	95
사례54) 조심하세요, 증간 소음 항의하면, 칼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96

사례55) 조금 다른 옷 주의보, 친구들에게 따 당하고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	97
사례56) 특별 할인 반갑지 않아요 .....	98
사례57) 야, 너네 엄마 외국사람 맞지? 무슨 사람이야? .....	99
사례58)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면 유치원도 못 가나요? .....	100
사례59) 모든 피는 같은 색입니다 .....	101
사례60) 귀화하셨나요? 그래도 대출 안 됩니다! 당신의 외모는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	102
사례61) 외국인 등록증 있어요? 없으면 회원 가입 안돼요! .....	103
사례62)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	104
사례63) 의료보험 없는 것도, 자꾸 물어보는 것도, 모두 나를 힘들게 해요 .....	105
사례64) 패션, 내 취향이니, 쓰레기통 같은 입을 다무시지요! .....	106
사례65) 사진사면 사진에만 집중하세요! .....	107
사례66) 지금 돈 없어. 너희들이 자꾸 이러면 내가 경찰한테 신고해 버린다! .....	108
사례67) 폭력 남편이 아이 양육의 능력자일 수 있을까요? .....	109
사례68) 아이고 한국에 외국인 있어 못살아 .....	110
사례69) 하수구가 막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원인은 다 외국인 탓! .....	111
사례70) 선생님, 간식 셔틀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흥분하시죠? .....	111



# I. 모니터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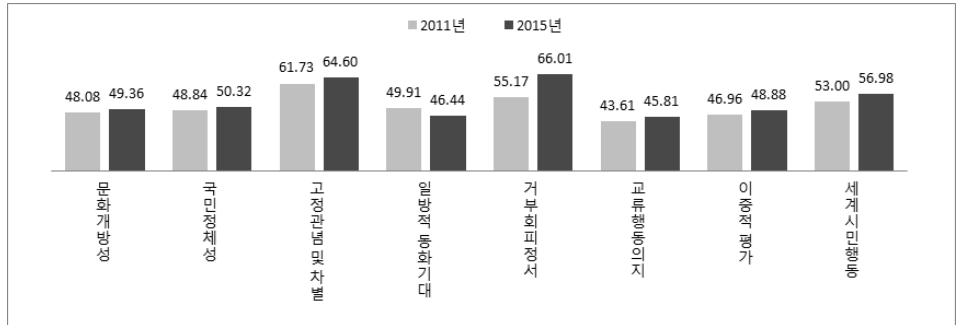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 1. 목적과 필요성

- 한국 사회의 심각한 인종차별 현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권고
  - 2014년 6월 유엔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 조사 직후,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하며, “미디어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단체의 활동 등”을 “우려할 만한 사례들”로 소개함(연합뉴스 2014.10.06.)
  -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사회에 비시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며, “한국 정부가 인종 우월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거나 외국인에 대하여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적발,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함
  - 2007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단일민족 국가의 인종적 우월성을 극복”할 것을 권고함
  
- 지체되고 있는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과 반다문화주의 및 외국인 혐오주의의 집단화
  -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국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2015년 조사의 경우 2011년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나아졌으나 ‘일방적 동화기대’ 요소가 8개 구성요소들 가운데 유일하게 2011년보다 낮아졌다는 점에서 우려됨(안상수 외 2016). (그림1-1)
  - 시민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반다문화 및 외국인 혐오주의의 집단화 및 정치세력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됨. ‘신인종주의’를 매개로 인터넷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반다문화주의자들의 규모는 6천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됨. 이들 중 일부는 사회단체로 등록되

<그림1-1> 2011~2015년 다문화수용성지수의 구성요소별 비교



어 있으며 “정부의 이주민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한국인의 내면화된 인종주의를 빠른 속도로 ‘공론화’시킴 (강진구 2012, 김현미 2014).

○ 차별의 일상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

-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 가정의 40.7%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도 38.3%에 달함.
-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별 경험도 증가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이주민이 편견과 차별에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6.6인데 비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이 겪는 편견 차별은 24.7로,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차별 경험이 가파르게 증폭되고 있음이 확인됨(전기택 외 2013).
- 차별의 중요한 요소가 한국 사회에 둔감한 ‘인종 및 피부색’ 요인이라는 점도 주목을 요함.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따르면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의 차별 경험의 상당 부분은 ‘인종/피부색’이라는 차별 요인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남(오경석·이경숙 외 2015). (표1-1)

〈표1-1〉 경기도 외국인 주민 차별 요소에 대한 요인 분석

설명 \ 요인	인종·피부색	종교	언어
설명변량	21.6%	20.1%	15.2%

p=0.586

○ 중요한 차별 요인으로서 ‘인종·피부색’ 그러나 인종차별 관련 실태 조사 전무

〈표1-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 사유별 이주민 상담 현황

(단위: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b>합 계</b>	<b>20,829</b>	<b>2,141</b>	<b>2,293</b>	<b>2,529</b>	<b>2,978</b>	<b>2,974</b>
성별	632	39	61	68	78	72
종교	148	11	22	15	11	17
장애	6,752	851	833	937	1,112	1,072
나이	1,477	217	142	158	197	155
사회적신분	1,853	136	157	198	231	213
출신지역	154	9	8	14	10	18
<b>출신국가</b>	<b>547</b>	<b>78</b>	<b>55</b>	<b>42</b>	<b>64</b>	<b>69</b>
<b>출신민족</b>	<b>31</b>	<b>2</b>	<b>3</b>	<b>2</b>	<b>5</b>	<b>3</b>
용모, 신체조건	309	27	27	27	39	55
혼인여부	119	8	16	8	11	12
임신, 출산	315	34	31	45	45	47
가족상황	154	15	15	16	17	23
<b>인종</b>	<b>33</b>	<b>1</b>	<b>2</b>	<b>4</b>	<b>8</b>	<b>5</b>
<b>피부색</b>	<b>14</b>	<b>2</b>	<b>-</b>	<b>2</b>	<b>4</b>	<b>2</b>
사상, 정치적의견	78	6	5	4	3	6
전과	305	16	22	42	44	39
성적지향	36	-	4	4	5	12
병력	630	63	67	71	75	83
학벌/학력	288	31	28	30	38	24
성희롱	5,030	491	661	602	764	819
기타	1,924	104	134	240	217	228

-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인종차별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총 77건으로 2012년 65건, 2013년 67건, 2014년 74건 등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됨(최정규 2016) (표I-2)
- 그러나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내 법률은 부재함.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한국정부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정례보고서에 따르면 인종차별에 대한 기소 건이 없다고 보고됨. 국제 사회가 우려할 만한 실질적인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인권위 상담 사례에서도 확인되나,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인종주의가 전무한 사회임

## 2. 관련 연구와 본 조사의 의의

- 인종차별을 주제로 하는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차별행위의 범주에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등 인종에 따른 차별 행위들을 포함시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인종주의 관련한 상담 및 진정 건수 등을 보고하고,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 모니터링”(2010년)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생활 세계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실태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 모니터링”: 대학생 10명이 한 달간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공개 블로그, 이미지, 댓글 및 동영상에 나타난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표현 사례 210건 수집
  
- 인종 차별 실태에 관련된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으나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제노포비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최근 들어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
  - “한국 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 분석을 위한 개념과 지표의 구축”(김용신 2014):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근거한 인식 양태와 행동을 의미함. 제노포비아를 재개념화하고 지표를 개발하여 초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인식 실태 사례분석에 적용함. 그 결과 이주자의 적극적 정치 관여는 유보적, 이주자의 문화적 고유성은 사회통합성의 맥락에서 조정 필요, 이주자의 사회문제 유발은 혐오적 성향 증가 요인으로 분석됨
  -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적 담화구조”(이창수 2015): 비평담화분석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공적 담화 속에 드러나는 인종차별적 담화 관행을 분석함. 현대사회에서 인종차별적 담화는 과거와 같이 특정 인종을 노골적으로 폄훼하는 것 보다는 다수 인종의 관점에서 소수 인종과 관련되는 문제를 반복 거론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형태로 구성됨. 한국 사회의 공



공 담화 역시 소수 인종에 대한 특정 문제를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방식으로 인종차별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생성함

-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한희정 2016):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게시물과 댓글의 내러티브에 담긴 이주여성을 향한 네티즌들의 감정 특성을 분석. 정의, 평등, 국가주의를 근거로 분노 감정을 정당화함. 국제결혼 사기사건, 외국인노동자 범죄 보도 등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혐오 감정을 확산시킴.
-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에 관한 경험적 분석”(임재형·김재신2014): 조선족, 탈북자, 외국인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비혐오집단으로 나타남.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문화적 측면에서 아직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차 인식되지 않고 있기에 혐오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충완·우형진 2014): 이주노동자 범죄보도 노출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주노동자와의 접촉 경험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조규범 2012): 제노포비아의 개념과 문제점, 외국에서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정책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대응방향 서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민정책과 법제를 포괄하고 이민정책의 강화와 인종차별 금지 법률 제정을 주장함.

○ 본 조사의 의의

- 본 조사의 차별적인 의미는 일상생활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음

###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한 인종차별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최초의 실증적 조사 결과를 공론화함으로써 관련 법제의 부재로 인종차별에 둔감한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 실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정책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함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심포지움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인권 기구들의 권고 수준에 부합하는 인종차별 예방 및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제개정, 인종차별의 범죄화,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방식에 대한 홍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
-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역 사회 기업, 관공서, 학교 등의 의사결정직 인물 대상의 다문화 인권 교육에 활용하고, 지역 사회 차원의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다양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함
- 인종차별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당사자 집단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한 당사자 조사 요원들을 센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장된 인권 의식 및 강화된 위기 대응 역량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회를 제공함





## II. 모니터링 내용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 1. 전문가 자문

○ 모니터링 조사지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3.3.~3.16.)

- 인종차별 현황, 개념, 조사 범주, 요원 교육, 사업 운영 시 주의할 점, 활용 방안 등 11개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청취 (표II-1)

- 전문가: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김현미(연세대), 최진(국가인권위원회)

〈표II-1〉 인종차별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내용

질문지	자문
한국의 인종차별 현황	관련 법제 부재 속, 외국인혐오 단계에서 인종주의적 차별 단계 이행기
한국에서의 인종차별 이유	IS테러 등 국제적 요소, 장기/정주 외국인 증가, 개인적 반감의 조직화
지역차원의 개선 방안	분리주의 금지, 공공 부문의 이주민 참여 및 기여도 홍보, 다양성 가이드라인 제정
인종차별(주의)의 개념화	GDP인종주의, 신인종주의, 한국적 인종주의의 역사성, 내재화된 인종주의에 대한 저항의 어려움
인종주의 조작적 정의	인종화(racialization) 및 인종과 다른 사회적 차별범주와의 결합,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준거 (인종적 우월성, 증오감, 비하 등)
모니터링 목표	당사자 관점의 차별사례 발굴, 희망의 메시지
모니터링 요원 훈련	요원들의 '피해자화' 효과 최소화, 조사 과정을 통해 요원들의 자력화, 정기적 간담회 등
모니터링의 어려움	너무 짧은 조사 기간
어려움 극복 방안	요원들 사이의 공감대
조사 결과 활용방안	교재 및 다양성 가이드라인 제정 근거, 참여 요원들의 인적 자원화
향후 사업 수행 시 주의할 점	감수성, 인종주의를 고려하는 정책 수립의 계기 마련

○ 인종주의의 개념화와 한국적 인종주의의 특수성

- 인종차별주의의 개념: “특정 피부색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며 사회적 자원 배분이나 문화적 인정에서 배제되며 차별받는 것”.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 인종화(racialization) 등의 구분(전문가조사에서 김현미 교수)
- 인종화(racialization): 인종화는 ‘신체적 특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담론적, 문화적 과정. 인종 구분과 유사한 의미와 가치를 환기시킴으로써 소수 집단을 인종에 결부시켜 표시하고 낙인찍는 과정을 뜻함(전문가조사에서 김현미 교수)
- 한국 사회 인종차별의 복합성(인종+계층, 생물학적 인종주의+신인종주의), ‘GDP인종주의’(전문가 조사에서 이완 대표). 인종은 다른 사회적 범주인 계급, 성, 국적, 성적지향성 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범주이며 차별 또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원에서 발생(전문가 조사에서 김현미 교수)
- 가장 금기시되는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질 수 없는 한국적 특수성(전문가 조사에서 김현미 교수, 최진 사무관)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 근거하여 인종적 우월성, 증오감, 비하 또는 인종차별을 정당화시키거나 부추기려는 의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범주화하고, 하위 단위로서 인종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 인종적 비하 관련 내용, 인종적 증오감을 표시하는 사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부추기려는 의도성 표현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 필요(전문가 조사에서 최진 사무관)

## 2. 모니터링 조사지 개발

### ○ 인종차별의 재개념화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해 인종차별의 재개념화: “인종, 피부색, 출신국, 출신민족, 종족을 이유로 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시’하는 개인의 말이나 행동, 법이나 제도,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미디어 게시물을 총칭함

### ○ 모니터링 조사지 개발

- 이를 참조하여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일상적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범주를 구성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판단함

〈표II-2〉 모니터링 범주와 항목(4개 영역, 8개 항목)

범주	항목
가. 피부색 등 외모 차별	① 백인 우월주의 조장
	② 외모, 유색인 비하 및 희화화
나. 출신국가 차별	③ 선진국 우월주의 조장
	④ 지역 및 출신국에 대한 비하 및 희화화
다. 외국인 신분 차별	⑤ 외국인을 열등하게 표현
	⑥ 외국인을 무시, 비하, 혐오 조장
라. 종교 등 타문화 차별	⑦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비하나 혐오 조장
	⑧ 타국의 전통에 대한 비하나 희화화



- 피부색 등 외모, 출신국가, 외국인 신분, 종교 등 타문화 네 개의 차별 범주 설정, 각 범주 당 두 가지 하위 범주로, 총 4개 영역, 8개 항목의 조사지 구성 (표II-2)
-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인종차별: 백인에 대한 선호나 우월감을 강조하는 말이나 행동/ 유색인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말이나 행동
- 출신국가에 따른 인종차별: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출신에 대한 선호나 우월감을 강조하는 말이나 행동/ 출신국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말이나 행동
- 외국인 신분에 따른 인종차별: 다문화가정, 난민, 외국인 신분을 열등하거나, 불쌍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 다문화가정이나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말이나 행동
- 종교 등 타문화에 따른 차별: 이슬람, 무슬림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말이나 행동 (표II-3)

〈표II-3〉 범주별 차별 사례 예시

범주	항목	차별 사례 예시
가.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인종차별	①백인 우월주의 주장	□ 취업 준비 모임에서 관리자가, 흑인 여성의 차례가 되었을 때 명함을 주는 것을 거절하면서 “미안하지만 회사들이 백인 선생님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②외모, 유색인 비하 및 희화화	□ 아이들과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말을 걸었다. “너희는 미안마야, 아니면 어느 나라야? 한국말 잘 하네” □ “눈 땔 수 없는 가녀린 팔 다리, 한줌 개미 허리 난민 바디” (한국경제TV 2016.01.29.)

나. 출신국가에 따른 인종차별	① 선진국 우월주의 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이 외국인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묻는다.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반대 안 했냐, 기왕 외국인하고 결혼할 거면 영어권 사람하고 결혼하지 그랬냐”고 말한다.</li> </ul>
	② 아시아 등 타지역, 타국에 대한 비하 및 희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철을 타고 집을 가는 길에 낯선 남자가 영어로 말을 걸었다.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한 번 연습해 보려고 말 걸었다며, 영어 되게 잘 하게 생겼다고 말했다.</li> </ul>
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신분에 따른 인종차별	①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열등하게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처럼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지 않은지,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은지 물었다.</li> </ul>
	②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무시, 비하하거나 혐오 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대로 보이는 외국인이 큰 짐을 들고 버스에 타자 버스 기사가 반말로 “어디 가? 왜 이렇게 큰 보따리 가지고 다녀?”하고 물었다. 버스에서도 계속 “어디서 내려, 언제 내려” 반말로 물었다.</li> <li>□ 친구들과 식당에 갔다가 주인아주머니가 계속 반말을 하기에 손님한테 왜 반말이냐고 하자 오히려 주인아주머니가 화를 내며 가게에서 쫓아냈다.</li> <li>□ 퇴근 후에 (공장)작업복을 입은 채 오디오를 사러 가서, 보여 달라고 했더니 오디오는 보여주지도 않고 돈이 있냐고만 물어봤다.</li> </ul>
라. 종교 등 타문화에 따른 차별	①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비하나 혐오 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 IS가담,,,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 아냐” (MBN뉴스 2016.01.20.)</li> </ul>

※ 사례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이주민인권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 3. 모니터링 내용과 정책 제언

#### ○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총 191부의 모니터링 조사지 수집함. 그 가운데 유효한 사례는 185부.
- 직장은 물론이요, 상점, 학교, 공공시설, 대중교통, 근린, 종교 및 엔지오, 사적 공간 등 일상을 구성하는 전방위적인 공간에서 인종주의적인 차별이 관측됨
- 외모, 경제력, 학력, 계층과 직업, 성 등 인종차별의 요인들은 국민 내부의 차별 요소들과 상당 부분 중첩됨
- 한 가지 요소에서 촉발된 차별은 다른 요소/행태들로 중첩,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처우의 불평등과 모욕, 고정관념과 편견 및 그에 근거한 모욕, 젠더 차별과 계층 차별
- 생각보다 심각한 제도적 인종주의: 교육 시설 및 공공 부문에서의 노골적인 분리주의, 거부,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처우 및 기회에서의 불평등, 불공정한 법집행, 무고 등이 의외로 빈번함
- 차별 주체의 다원화: 아이들 사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출신국과 특정 종교, 문화를 둘러싼 차별이 관측됨
- 차별을 시정하거나 저항할 법제나 시설의 부재: 심각한 인종주의(거부, 모욕, 불공정한 처우, 신체적 폭행, 성희롱 등)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은 그냥 감내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응함

○ 차별 범주별 인종차별 사례

- 외국인 신분, 출신국가, 피부색 등 외모, 종교 등 타문화 분야의 순으로 차별 사례가 수집됨 (표II-4)

〈표II-4〉 차별 범주별 사례 현황

차별 범주	사례 수
피부색 등 외모	29
출신국가	58
외국인 신분	83
종교 등 타문화	15
합	185

○ 차별 장소별(중복 사례 포함) 인종차별 사례

- 교육 공간, 직장, 상업, 근린, 제도, 교통, 사적 공간 등에서 골고루 인종차별이 관측됨. 주목할 것은 '제도적 인종주의'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교육 및 제도 공간에서의 인종주의적 차별이 매우 광범위하게 관측되었다는 점. (표II-5)

〈표II-5〉 차별 장소별 사례 현황

차별 장소	사례 수
사적 공간(가정 등)	18
교육 시설(학교, 학원 등)	34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등)	18
근린	26
미디어	5
병원	8
상업시설(옷가게, 식당 등)	27
제도(주민센터, 법무부 등)	20
종교 및 엔지오	3
직장	31
합	190

○ 차별 행태별 인종차별 사례

- 네 가지 차별 범주와 관련된 무시, 비하, 모욕, 혐오가 가장 많았고, 고정관념과 편견, 기회와 처우에서의 불평등, 따돌림과 분리 등도 일반적으로 관측됨. 거부, 폭언 및 협박, 무고 등 보다 적극적인 차별 행위도 적지 않게 관측됨. (표II-6)

〈표II-6〉 차별 행태별 사례 현황

차별 행태	사례 수
고정관념과 편견	32
무시, 비하, 모욕, 혐오	53
기회와 처우에서의 불평등	24
폭행	3
따돌림과 분리	22
거부	17
기본권	8
성희롱	3
폭언 및 협박	15
무고	8
합	185

- 유효한 185개 사례를 연구진이 차별 장소 및 차별 요소별로 재분류한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II-7)

〈표II-7〉 인종차별 전체 사례 분류표

번호	차별장소	차별 요소	비고
1	상점	고정관념	비싼 것에 대한 구매능력 없음
2	교육/학교	외국인 차별	언어
3	직장	고정관념	업무능력 비하
4	직장	구직기회 박탈	언어
5	상점/시장	언어, 폭행	주변인들의 방치
6	상점/여행사	외국인 차별	항공권 임의변경
7	근린	이유 없는 혐오	말투
8	직장	출신국 차별	중국/몽골
9	상점/서비스	외국인 차별	바가지(인테리어 업자)
10	병원	외국인 차별	불친절, 무시
11	직장	국적취득자 차별	처우
12	근린	출신국 고정관념	가난, 물건 값 깎기
13	교육/학교	언어, 따돌림	아동사이에서의 차별
14	직장	처우차별, 고정관념	눈치 없음, 일 못함
15	상점	고정관념, 모욕	냄새
16	근린	고정관념	가난
17	교육/학교	분리주의	한국인 아이, 다문화 아이
18	근린	출신국 고정관념	가난
19	직장	처우차별	급여
20	직장	처우	태도
21	제도	가족 상봉 및 이동권 제한	미등록

22	병원	고정관념	이해력 없음, 불쌍한 시선
23	교육/학교	정보 및 접근권 제한	일방적인 한국어
24	제도	보육 제한	미등록 자녀
25	교육/학교	문화	한국어 이름 강요
26	직장	처우 차별	근로 및 회식
27	교육/보육기관	거부	외국인 입학 거부
28	가정	따돌림	가족 내 따돌림
29	제도/병원	외국적 아동 의료서비스	주민번호 대체어려움
30	교통/택시	모욕, 비하	국산? 외국산?
31	직장	고정관념	시끄럽다, 나쁜 말 한다
32	직장/근린	성희롱	집단적, 노골적 성희롱 언어
33	직장/상업	취업 장벽	다단계사기
34	제도	불공정한 심사	영업 허가
35	직장/사적공간	처우(직장)	데이트폭력, 성적학대
36	상점,택시,병원	외국인 차별	모욕, 바가지, 불친절
37	근린	고정관념	일본-이기적 민족
38	직장	처우 차별	모욕
39	교통/택시	외국인 차별	반말, 바가지
40	교통/버스	모욕, 고정관념	무지, 못배움
41	상점	외국인 차별	반말, 바가지
42	병원, 근린	고정관념	혐오발언(시끄러움, 더러움)
43	병원	외국인 차별	반말, 모욕(돈, 아웃팅)
44	제도	모욕	귀화시험 결과변경
45	근린	고정관념	위험
46	NGO	분리주의	국적별 분리



47	미디어	희화화	외국인 발음
48	상점	성희롱	강압적으로 전화번호 물음
49	제도	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 미기재	(개선됨)
50	종교 및 NGO	문화	이슬람혐오
51	교육/학교	외국인강사 무시	다문화, 인권의식 없는 교사
52	가정	외국인배우자 무시	투명인간, 도우미 취급
53	교육/보육	외국인부모 비하	아동 사이
54	가정	무시, 비하	양육 능력
55	직장	외국인 차별	언어 능력
56	교육/학교	분리주의	다문화 아동
57	가정	고정관념	음식문화, 가난, 양육방식
58	교통/지하철	피부색	분리
59	직장	처우 차별 및 위협	미등록
60	제도	기본권 제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출신국 고정관념
61	교육/학교	고정관념	'쪽바리', 아동사이
62	미디어	외국인 차별	피의자 신상 공개
63	가정	출신국 고정관념	음식 문화
64	직장	처우	국적취득 외국인
65	교통/지하철	폭언, 폭행	시비걸기, 주변인 방관
66	가정	고정관념	음식문화
67	병원	고정관념, 불친절	기후와 피부
68	직장	처우, 언어폭력	체류 연장을 위한 감내
69	교통/버스	외모 차별, 모욕	'외국인 같은 외모'
70	직장	처우	해고 위협

71	직장	폭언	한국어 미숙
72	교육시설	고정관념	가정교육 미비, 일탈행동 의심
73	상점(식당)	거부, 모욕	반말, 입장 거부
74	근린	무고, 반말, 혐오발언	‘너희 나라 가서 장사해’
75	교통/택시	외국인 차별	바가지, 언어
76	가정	외국인 차별	무시
77	미디어	불공정	외국인사건에 대한 일방적 보도
78	근린	고정관념	술, 게으름, 돈, 투정
79	상점/식당	모욕	냄새
80	근린	특정국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돈
81	상점	거부, 무시	흥정 및 입장 거부
82	직장	처우	임금체불, 위협
83	직장	폭언	반말
84	근린	모욕, 고정관념	가난, 기혼
85	근린	무고, 무시	음식물 쓰레기 투기 의심
86	직장	모욕	동전으로 급여 지급
87	교육/학교	고정관념	희화화
88	교육/학교	외모차별	외국인 같지 않은 외국인
89	근린	외모차별	한국인과 다른 외모
90	교통/지하철	무차별 폭행	주변의 방관
91	직장	피부색	따돌림, 무시
92	가정	출신국 비하	‘너네 나라 자존심’
93	교육/학교	출신국 차별	백인 우월주의
94	직장	기본권 제한	건강보험, 산재

95	근린	고정관념	이주여성 성적대상화
96	교육	외국인 차별	특정 국가 무시
97	직장	처우	임금
98	상점	모욕, 고정관념	외모, 언어
99	근린	특정국가 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돈
100	가정	문화 비하	음식 문화
101	가정	무시, 모욕	돈
102	제도	고정관념, 모욕	국적취득면접 시 '도망가려구요'
103	근린	피부색	'까만 스타'
104	교육/학교	분리주의	다문화
105	교육/학교	특정국 고정관념	일본
106	교육/학교	고정관념	이중 언어 못하는 다문화 아이
107	근린	모욕, 혐오발언	'그럼 여기 왜 왔어'
108	교육/학교	특정국가 비하	일본
109	교통/택시	모욕, 고정관념	돈, 도주
110	근린	외국인 차별	무례함, 하대
111	제도	분리주의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112	직장	처우와 기회	비국적자 차별
113	직장	고정관념	게으름, 더러움, 무지
114	제도	분리주의	다문화 및 비다문화 용어
115	미디어	결혼이주여성 고정관념	돈, 도주
116	제도	국적주의 강요	롯데회장 국정감사
117	교육/학교	음식문화 비하	아동 사이
118	근린	분리주의	다문화

119	상점	분리주의	특별할인
120	근린	고정관념	떼놈, 족바리
121	제도	외국인 차별	한국 사회 동화 지원
122	제도	분리주의	다문화 및 비다문화 용어
123	교육	차별적 관점	교과서
124	제도	동화주의	다문화 말하기, 전통한복 패션쇼
125	미디어	분리주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역사회청소년
126	직장	처우와 기회	구직 자격 차별
127	교통/택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고정관념	무례
128	교육/학교	외국인 차별	다문화 강사에 대한 무례
129	제도	거부	결혼이주여성 등본 발급 시
130	교육/학교	고정관념	교사
131	교육/학교	타문화 비하	교사
132	근린	외국인 차별	무시
132	교육	분리주의	‘우리나라’라는 배타적 용어 사용
133	가정	문화	문화 차이 무시
134	제도	분리주의	다수자 소수자 범주 구분, 문화부 무지개다리사업
135	교육/학교	외국인부모 차별	교사
136	교육	무시, 고정관념	언어 무능력 전제
137	상점	외국인 차별	외국인 종업원
138	근린	외국인 무시, 고정관념	언어 무능력 전제
139	근린	폭행, 위협	충간 소음

140	상점	거부, 고정관념	입장 거부, 언어, 시끄러움
141	교통/지하철	분리주의	떨어져 앉기, 수근거림
142	상점/부동산	고정관념, 무시	일시체류, 가난
143	상점	외국인 차별	동료 한국인
144	교통/버스	폭언, 무시	정보부족, 언어
145	교통/지하철	분리주의	거리두기, 노골적 불평
146	교육	타종교, 문화 차별	이주민의 이주민 비하, 무슬림
147	직장	처우, 반말	외국인간 지위 차별
148	가정	출신국 고정관념, 무시	돈, 가난
149	교육	외국인 차별	운전면허학원
150	가정	외국인 차별	무시, 위협, 괴롭힘
151	상점	출신국가별 차별	'동양인'과 '일본인'
152	상점	외국인 차별	회원가입 자격
153	교통/버스	특정국가 모욕	냄새, 피부색
154	가정	외국인 차별	외국인며느리 반대
155	근린	타종교	무슬림 비방
156	교통/버스	폭언과 모욕	언어와 정보부족
157	상업시설	거부, 피부색	사우나 입장 거부
158	상점	외국인, 외모 차별	혼혈아 모욕, 순혈주의
159	직장	기회와 처우	직원 채용 시 피부색 차별
160	직장	기회와 처우	직원 채용 시 피부색 차별
161	가정	학대	언어 능력
162	상점	거부	비한국어 사용자 입장 금지
163	학교	문화 차별	히잡, 아동 사이
164	직장	외국인간 차별	흑인과 아시안

165	상점/부동산	고정관념, 거부	이슬람권 임대 거부
166	교육/유치원	거부	다문화 가정 자녀 입학 거부
167	상점	고정관념	비하
168	상점/은행	거부, 외국인 차별	귀화자 대출 차별, 남편의 보증 요구
169	상점/상업시설	거부	결혼이민자 신용카드 발급 거부
170	가정	출신국 차별	비하, 모욕
171	근린/놀이터	타종교 문화, 따돌림	무슬림 아동 따돌림
172	교육/학교	다문화 아동 고정관념	교사
173	교통/기차	국적, 피부색	폭언
174	가정	피부색	흑인, 혼혈손자 차별
175	교통/버스	타종교 문화	무슬림 모욕, 오인
176	교육/학원	외모 차별	비만
177	교육/학원	출신국, 처우	피부색, 외모
178	제도	의심	경찰의 부당한 의심과 검문
179	교육/학교	출신국, 피부색	교수, 아프리카 모욕
180	병원	거부, 피부색	수혈
181	종교시설	피부색, 고정관념, 거리두기(따돌림)	흑인
182	근린	출신국 비하, 무고	아프리카
183	제도	처우	불공정한 과태료 처분
184	제도/공항	흑인 고정관념	의심, 입국거부
185	제도	출신국 차별	난민신청자

- 정책 제언: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 11월 정책 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참조하여 인종차별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함.
  - 관련 법제의 마련: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혹은 개별법인 인종차별 금지법, 어떤 형태가 되었던, 유엔이 권고하는 바와 같이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관련 입법과 법률의 제정이 매우 중요함
  - 유엔 개인진정제도의 활용: 인종차별을 특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제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구제 방안으로, 국제기구의 개인진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정규적인 실태 파악의 필요성: 정책의 입안 및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인종차별 실태에 대한 정규적인 조사임. 유럽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조사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 정부와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연대가 요청됨
  -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한국에서 인종차별은 관행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관용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제재가 따르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의 인종주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반인종주의 교육, 차별 피해자가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공적인 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중앙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경기도나 지자체 차원에서 인종차별 예방과 구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과 시행이 필요함. 인종주의 예방은 시민사회와의 관계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서 유리한 지방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임. 공적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한 행정 감독이나 행정 지도의 강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과 모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인

센티브 부여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함. 지자체 차원에서 역내 공공 및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반인종주의 혹은 다양성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 반인종주의 문화를 조직 내 확산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III. 모니터링 추진일정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 1. 모니터링 추진 일정

○ 본 모니터링은 2016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됨. (표Ⅲ-1)

〈표Ⅲ-1〉 2016 인종차별 모니터링 추진 일정

월	조사 내용
1~2월	- 인종차별 개념화 및 양식 개발을 위한 문헌 조사
3월	- 전문가 자문(학계, 공공부문, 시민사회) - 외국인지원단체에 모니터링 요원 추천의뢰 - 모니터링지 양식 개발
4월	- 모니터링 요원 선발 - 오리엔테이션 - 모니터링 실시
5~9월	- 정기 간담회 진행 -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요원 추가 선발
10~11월	- 모니터링 조사지 분석
11~12월	- 조사 결과 보고회 및 심포지엄 - 최종보고서

## 2. 모니터링 방법

- 모니터링 요원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인종차별 사건을 제시된 “인종차별 모니터지” 양식에 기록하여 제출함.
  - 주로 이메일을 사용.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일부 모니터링 요원을 위하여 모니터링 사업 안내와 양식을 영문으로 만들고, 그들과는 영어로 조사 사업 진행함.
  
- 모니터링 요원 선발 (2016.04.)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친밀한 관계형성 및 신뢰 관계가 구축된 이주민 지원 단체들로부터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정도, 한국어 능력, 모니터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본 모니터링 조사에 적합한 당사자 조사 요원을 추천 받음
  - 각 센터를 방문해, 추천받은 모니터링 요원 후보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함
  - 7개국(베트남, 페루, 몽골, 일본, 중국, 라이베리아, 우간다) 출신 6개 지역(부천, 군포, 구리, 남양주, 안산, 시흥)에서 활동하는 14명의 이주민 당사자 모니터링 요원이 선정됨.
  - 성비는 여성 12명, 남성 2명으로 여성이 다수였으며, 체류자격은 결혼이민, 난민, 유학생, 귀화, 미등록 등으로 다양함. (표Ⅲ-2)
  -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획했으나, 남성 조사원의 부족, 이주노동자와 한국 사회와의 제한된 접촉면(사업장 외에 한국인들과의 접촉 공간은 대중교통 사용 정도가 전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거리감 등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중간에 포기함

〈표Ⅲ-2〉 2016 인종차별 모니터링 요원 인적사항(일부 가명)

연번	시군	이름	성별	출신국	현 체류자격	직업
1	부천	응웬	남	베트남	미등록	식당서빙
2	부천	파올라	여	페루	미등록	주방보조
3	부천	어트거	여	몽골	유학생	학생
4	부천	노밍게르	여	몽골	결혼이민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5	부천	쿠미코	여	일본	결혼이민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6	부천	김지연	여	중국	결혼이민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7	군포	즈엉	여	베트남	미등록	제조업 노동자
8	구리	현지영	여	베트남	귀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9	남양주	스가와	여	일본	결혼이민	주부
10	남양주	장서윤	여	베트남	귀화	바리스타
11	안산	크리스티나	여	라이베리아	결혼이민	영어강사
12	안산	제임스	남	우간다	난민신청자	아르바이트
13	안산	오은희	여	중국	귀화	보험업
14	시흥	왕약영	여	중국	귀화	사무직

○ 모니터링 요원과 연구진의 정례적 미팅

- 모니터링 요원들과 연구진 사이의 집단적 혹은 개별적인 정례적 미팅을 통해 모니터링 조사의 문제의식(인종차별 개념, 조사 방법, 사례 내용, 예방 혹은 구제 방안)을 공유하고, 방법론을 교육함. 조사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적기의 자문을 제공함.
- 정례적인 미팅을 통해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 실태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들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공감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사요원의 ‘피해자’ 효과를 최소화하고 조사 과정이 조사원의 차별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비롯한 조사원들의 주 활동 지역으로 회의 장소를 옮겨가며 총 19회의 집단 및 개별 모임을 진행함. (표Ⅲ-3)

〈표Ⅲ-3〉 모니터링 요원들과의 간담회 현황

번호	일자	장소	번호	일자	장소
1	4.7.	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11	6.13.	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2	4.15.	아시아인권문화연대	12	6.18.	센터
3	4.17.	(사)아시아의창	13	6.20.	센터
4	4.26.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14	6.21.	센터
5	4.29.	센터	15	7.17	(사)아시아의창
6	5.4.	센터	16	7.19	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7	5.9.	아시아인권문화연대	17	7.25	아시아인권문화연대
8	5.9.	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18	8.22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9	5.31.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19	9.5	센터
10	6.13.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오리엔테이션: 전반적인 사업 소개, 인종차별의 개념, 연혁, 사례 소개, 사례 연습
-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모니터링 요원들의 ‘의식’화: 인종차별의 개념을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차별 경험에 대한 인지도가 확연히 달라짐. 이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과 긍지를 공유함.
-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유된 인종차별 경험들: 지하철에서 피하는 것, 반말, 바가지요금, 병원 이용 시 반말로 욕박지르듯이 말하는 의사, 뭐든지 중국에

서 만든 거라면 이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특정 국가 출신에게 물건 판매 거부, 운전면허 학원에서의 모욕, 어눌한 한국어 발음에 따른 차별 등

- 간담회: 간담회 참석자간 사례 공유,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설명, 타 그룹(타 센터 추천요원) 사례 공유, 신문기사나 문헌을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 공유, 모니터링 진행에 어려운 점, 추가, 보완 사항, 모니터링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
- 조사 과정에서의 자기 성찰과 성장: 조사가 진행될수록 요원들은 해당 사례가 고유한 한국의 문화인지 인종차별인지, 외국인이라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행위인지 실질적인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깊게 고민하게 됨. 그에 관한 토론을 진행함.
- 중도 포기한 경우: 인종차별 예방 및 철폐와 관련된 활동이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걱정에 중도에 모니터링 요원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함: “저희는 그냥 한국에서 조용히 사는 게 좋아요. 사회활동보다 그냥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봉사나 할게요.”

○ 현장 단위들과의 긴밀한 공조

- 2016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은 이주 현장에서 인종주의적인 차별에 대한 민감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방과 구제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현장의 관련 단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임.
-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현장 기관들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음 (표Ⅲ-4)

〈표Ⅲ-4〉 모니터링에 협조해 준 현장 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부천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시
(사)아시아의창	군포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시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안산시

- 현장 기관들은 모니터링 요원들과 조사 기관인 본 센터 사이의 중간매개자로서 모니터링 방법과 사업 운영 관련 의견을 제안하고, 행정적 도움을 제공해 줌: 모니터링 조사지 수집 및 사후사업평가에 참여함.

- 현장 단위 활동가의 모니터링 조사 지원 사후 평가 실시. 사후평가에는 이은선 팀장(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김경희 국장(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이정은 팀장(아시아인권문화연대)이 참여함. (표Ⅲ-5)

〈표Ⅲ-5〉 모니터링 지원 현장 기관의 사후 평가

항목	내용
모니터링요원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진과 모니터링 조사원 사이의 정례적인 미팅과 소통은 매우 유용</li> <li>- 체계적 훈련의 필요성: 비자형태, 출신국가, 직업 등에 따라 차별에 대한 인식 다를 수 있음</li> <li>- 개별적 모임과 더불어 모니터링단 전체 모임 필요</li> </ul>
요원들에게 나타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감수성 및 차별 감수성 강화</li> <li>- 인식의 지평 사회적 확장,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금지</li> <li>- 새로운 일자리 선택에 기여</li> <li>- 가족안에서 인종주의 문제를 객관화, 가족 응집력 제고</li> <li>- 너무 과민해지는 부작용</li> </ul>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즌별, 상황별 차별 형태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음</li> <li>- 모니터링 요원 추천 단체의 실무자가 모니터링 정례 미팅에 참여함으로써, 요원에 대한 이해의 폭 넓어지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 지원 가능해짐</li> </ul>
조사결과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조사 필요</li> <li>- 모니터링 요원의 권한과 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당사자 조사원의 조사에서의 재량권 확장 필요</li> <li>- 모니터링 요원이 수집한 사례를 이용해 시민 교육 강사로 활용함</li> <li>-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요원들의 참여와 감수 필요</li> </ul>





# IV.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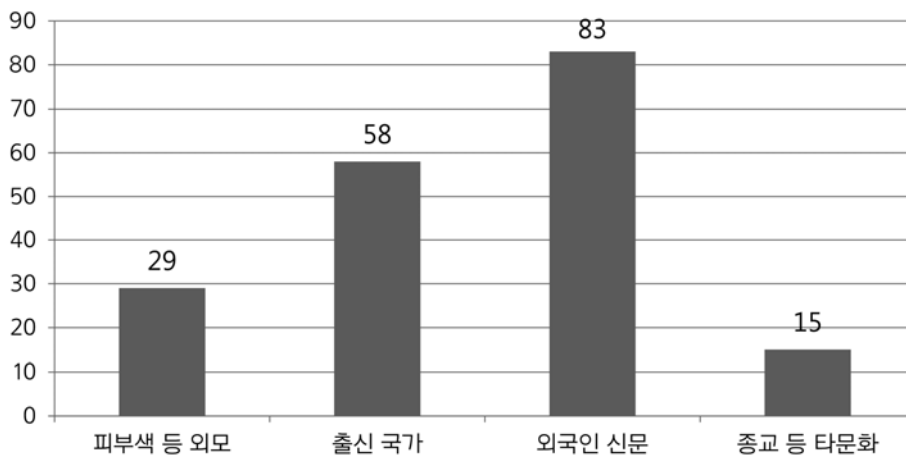


# 1. 개요

○ 최종적으로 수집된 인종차별 모니터링 사례는 191개였으나 그 가운데 중복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유효 사례는 185개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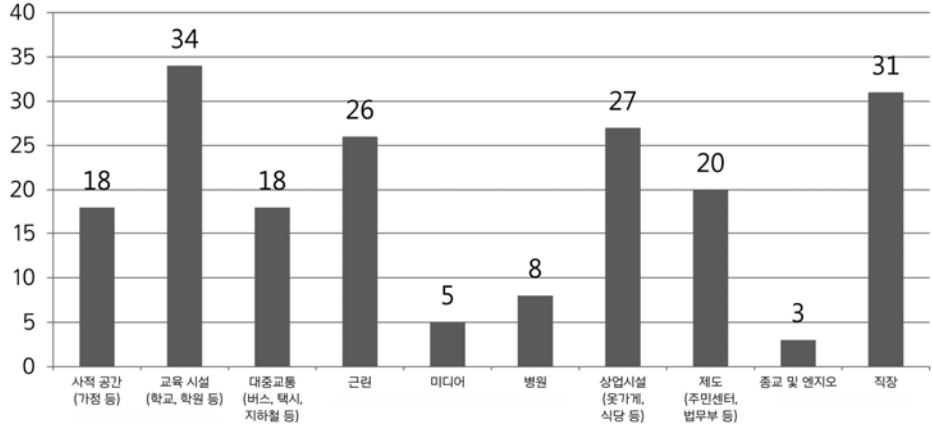
- 연구진이 조사원들이 관찰, 보고해 온 사례지를 차별 범주별로 분류한 결과, 외국인 신분에 따른 차별 83건,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58건,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차별 29건, 종교 등 타문화에 대한 차별 15건 등이었음. (그림 IV-1)

〈그림 IV-1〉 차별 범주별 사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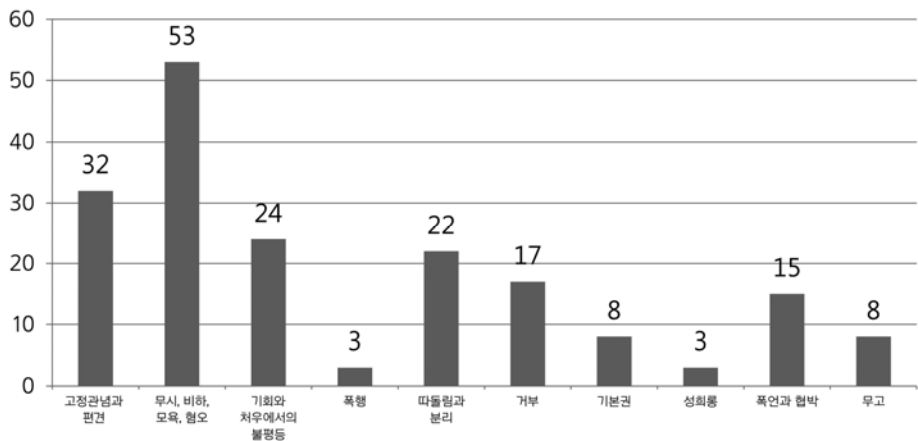
- 차별이 이루어진 장소별로 차별 사례들을 재분류한 결과, 교육 시설(학교, 학원 등) 34건, 직장 31건, 상업시설(옷가게, 식당 등) 27건, 근린 26건, 제도 공간(주민센터, 법무부 등) 20건,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등) 18건, 사적 공간(가정 등) 18건, 병원 8건, 미디어 5건, 종교 및 엔지오 3건 등이었음: 반편견·반차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교육 공간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져 할 공공기관에서의 인종침해가 각각 34건과 20건으로 빈번하게 관측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함. (그림 IV-2)

〈그림Ⅳ-2〉 차별 장소별 사례 현황(중복사례 포함)



- 차별 행태별로 사례들을 재분류한 결과, 무시·비하·모욕·혐오 53건, 고정 관념과 편견 32건, 기회와 처우에서의 불평등 24건, 따돌림과 분리 22건, 폭언·협박·폭행 18건, 거부 17건, 기본권 침해 8건, 부당한 의심 및 무고 8건, 성희롱 3건 등이었음: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인종차별이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여러 형태가 중첩되어 발생함을 확인함. (그림Ⅳ-3)

〈그림Ⅳ-3〉 차별 행태별 사례 현황



- 소개하는 사례 현황: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차별 2건,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2건, 외국인 신분에 따른 차별 2건, 종교 등 타문화에 따른 차별 2건, 사회적 공간에서의 차별 2건, 교육 시설에서의 차별 5건, 대중교통에서의 차별 2건, 근린에서의 차별 4건, 미디어에서의 차별 2건,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의 차별 3건, 상업시설에서의 차별 3건, 제도 공간에서의 차별 6건, 종교 및 엔지오 공간에서의 차별 2건, 직장에서의 차별 3건,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한 차별 5건, 무시, 비하, 모욕, 혐오에 의한 차별 5건, 기회와 처우에서의 불평등 2건, 폭행 2건, 따돌림과 분리 3건, 거부 4건, 기본권 차별 2건, 성희롱 2건, 폭언 및 협박 2건, 무고 3건 등 총 70건. (표IV-1)

〈표Ⅳ-1〉 사례 현황

범주	내용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차별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한국인이 아니죠?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앓으세요.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일본인과 동양인은 달라요
	엄마가 일본사람이면 너도 '쪽바리'
외국인 신분에 따른 차별	한국인 아니면 해외 프로모션 갈 수 없어요.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종교 등 타문화에 따른 차별	무슬림,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한국 것이 최고야
사적 공간에서의 차별	나는 가족 아닌가요?
	베트남은 못 사는 나라니까 돈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교육 시설에서의 차별	엄마 나라 말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중국인과는 같이 안 놀아
	다문화 가정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친구들은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교수님 왈, 아프리카 놈들은 모두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해
	다문화 가족,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대중교통에서의 차별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
	문지 마 폭행,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린에서의 차별	한국인은 가면 안 되는 '다문화' 축제
	코리아! 장사 노! 너희 나라 가!
	모국이 좋아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좋아요?
	외모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봐요, 우리 말 할 줄 알아요?

미디어에서의 차별	외국인 피의자만 신상 공개
	맥락 없이 결과만 보도되면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의 차별	외국인 환자는 왜 푸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한국어 되는 사람 데리고 와!
	똑같은 병원비 냈거든요, 진료 똑바로 해주세요!
상업시설에서의 차별	외국인에게는 물건 팔지 않아요.
	반말, 모욕, 바가지, 손님이 왕 맞나요?
	사우나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예요
제도 공간에서의 차별	나는 밥 먹고 할 일 없어 주제 파악 못하고 가지가지 하는 외국인 국적 취득 희망자가 아닙니다.
	나는 도망가려고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일본 국가 대표 선수가 아니예요
	애국심 감별은 축구 응원으로?
	우간다에서 왔다고 면허위조범은 아니죠
	경찰관님, 규칙은 공정해야죠
종교 및 엔지오 공간에서의 차별	한국이 위험해
	아프리카 사람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의 차별	한국 국적을 취득했나요? 그래도 당신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에 왔으니 그냥 말 잘 들어
	원숭이랑 같이 잘 수 없어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한 차별	선생님, 저를 도대체 왜 부르신건가요?
	한글 이름, 꼭 있어야 하나요?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전부도 아닙니다
	돈만 받고 도망간다면요? 그렇지요?
	이름 안 쓰면 다 한글 모르는 건가요?

무시, 비하, 모욕, 혐오에 의한 차별	다 알아드립니다, 말조심 하세요
	당신은 돈 받고 결혼했나요?
	물을 흐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기 물건은 비싸서 당신 같은 외국인은 살 수 없어요
	외국인들은 다들 이런 식, 내려
기회와 처우에서의 불평등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야,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지
	실력보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폭행	중국말 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해야 하나요?
	조심하세요, 증간 소음 항의하면, 칼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돌림과 분리	조금 다른 옷 주의보, 친구들에게 따 당하고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특별 할인 반갑지 않아요
	야, 너네 엄마 외국사람 맞지? 무슨 사람이야?
거부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면 유치원도 못 가나요?
	모든 피는 같은 색입니다
	귀화하셨나요? 그래도 대출 안 됩니다! 당신의 외모는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외국인등록증 있어요? 없으면 회원가입 안돼요
기본권 차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의료보험 없는 것도, 자꾸 물어보는 것도, 모두 나를 힘들게 해요
성희롱	패션, 내 취향이니, 쓰레기통 같은 입을 다무시지요!
	사진사면 사진에만 집중하세요!
폭언 및 협박	지금 돈 없어. 너희들이 자꾸 이러면 내가 경찰한테 신고해 버린다!
	폭력 남편이 아이 양육의 능력자일 수 있을까요?

무고	아이고 한국에 외국인 있어 못살아
	하수구가 막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원인은 다 외국인 탓!
	선생님, 간식 셔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흥분하시죠?



## 2. 차별 범주별 사례

### ○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차별

- 총 29건에 달하는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차별 사례들에는, 교통수단에서의 따돌림,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의 따돌림, 무례한 언설, 모욕, 고용 기회에서의 차별, 사우나 및 상업 시설 출입 거부 등이 포함됨. 대부분의 피해자는 검거나 어두운 피부 톤을 가진 경우이나, 때로는 밝은 피부를 가진 경우도 차별 대상에 포함됨.

### 사례1)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한국인이 아니죠?

한 이주여성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구두수선점에 들어가 구두 수선을 맡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두수선점 주인은 처음에 그 여성과 그녀의 딸을 가게 안으로 들이기를 꺼려하였다.

몇 분을 망설인 끝에 그들을 가게에 들였으나 (한국인들보다) 밝은 피부색을 가진 아이에게 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지 물었다. 아이가 자기 아빠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가게 주인은 수선 중이던 신발에서 눈을 들고 그렇다고 네가 한국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어린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 소녀는 분노에 차서 엄마에게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리고는 한국어로 가게 주인에게 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한국인이 되는데 부족한지 물었다. 소녀는 슬픔에 잠긴 채 그들은 가게를 떠났다.

(크리스티나, 여, 라이베리아)

## 사례2)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앉으세요

지난 저녁 퇴근하면서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40분 동안 걸리는 거리를 다행히 자리가 남아서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한 자리가 남았는데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도 왜 앉으려고 하지 않았지? 이상한 생각에 궁금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서 있는 사람 뒤에 아프리카 쪽 외국인이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앉으세요’라고 옆 사람에게 말하면 옆 사람이 ‘괜찮습니다, 앉으세요’라고 서로 양보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하철에 탈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현지영, 여, 베트남)

○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은 총 58건으로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차별 다음으로 많이 관찰된 사례임. 차별 형태에는 출신국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모욕과 비하, 구직 기회 박탈, 처우의 불평등, 분리와 따돌림 등이 포함됨.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에는 드물지만 위의 사례에서처럼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차별도 포함됨. 일부 국가 출신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포함하는 성적 차별도 포함됨.

**사례3) 일본인과 동양인은 달라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전통과자, 기념품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관광버스가 도착하면 바로 일본인인지 그 외에 동양인인지를 확인하고 시식을 준비한다.

시식과자 속에 들어있는 호두 등의 재료나 종류가 적은 것은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양인에게 주고 재료와 종류 많은 것은 일본인에게 주도록 지시받고 일해야 했다. 해외에서 오는 손님을 일본인은 일본인이라고 말하고, 그 외 나라는 그저 동양인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불편했다.

(스가와, 여, 일본)

**사례4) 엄마가 일본사람이면 너도 ‘쪽바리’**

제가 아는 일본분이 학교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교생이 전부 아이의 엄마가 일본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에게 아이들이 “쪽바리”, “일본사람”이라고 놀려서 그 엄마가 고민합니다.

(장서운, 여, 베트남)

○ 외국인 신분에 따른 차별

- 외국인 신분에 따른 차별은 총 83건으로 이번 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사례임. 무시와 비하, 거부, 처우, (미등록일 경우) 기본권 박탈, 폭언, 따돌림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차별이 관찰됨. 특히 협박 및 이유 없는 신체적 폭행 등 직접적으로 인신의 위해를 겨냥하는 차별 행태들이 포함됨.

**사례5) 한국인 아니면 해외 프로모션 갈 수 없어요**

A화장품 본사에서 자사(自社)의 방문 판매 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프로모션에 갈 사람을 모집했다.

본사에서 제시한 실적 등 조건을 통과한 같은 시기에 입사한 귀화여성(40대)과 이주여성(중국/30대)이 신청했으나 이주여성만 한국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해 갈 수 없었다.

(김지연, 여, 중국)

**사례6)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베트남 노동자가 냉동, 하수도 공사하는 힘든 일을 한다. 가끔 물이 젖어 있는 바닥에 누워서 냉동 하수도를 고쳐야 한다. 공사갈 때 호텔비, 식대비, 담배비 회사에서 노동자한테 준다.

반장님은 음료수를 살 때 베트남 노동자에게는 손으로 주지 않는다. 음료수를 바닥이나, 땅, 풀밭에 놓고 간다. 무시하는 표정(꺾그린 표정)을 지으며 턱을 아래, 위로 움직이며 가리킨다. 말은 하지 않는다. 베트남 노동자는 한국인들이 자신을 거지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즈영, 여, 베트남)

○ 종교 등 타문화에 따른 차별

- 종교 등 타문화에 대한 차별은 총 15건으로 이번 모니터링 조사에서 가장 적게 관측된 범주임. 이슬람과 (한국과 다른) 음식 문화에 대한 차별이 주류이나, 의상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비하도 관찰됨.

**사례7) 무슬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수원 지역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 여성(파키스탄)이 자신의 아이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이웃 아이들과 놀지 못한다고 제보했다.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갈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한국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소리쳐서 아이들을 그녀의 아이들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곤 했다. 그들이 무슬림이라는 것은 머리를 가리는 의상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점이 그 동네에서 아이들이 친구를 만드는 것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녀는 한국 이웃이 자기 가족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무슬림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느낀다.

(크리스티나, 여, 라이베리아)

## 사례8) 한국 것이 최고야

베트남 동생 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찐은 한국에 온지 2년 되었습니다. 찐은 시댁에서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찐이 고향음식이 그리워 음식을 만들면 시아버지는 “베트남 음식이 뭐가 맛있다고 만드냐! 한국음식이 최고지!”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찐은 속상했지만 꼭 참았다고 합니다. 찐이 친정을 방문하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보낼 수 없었던 찐의 친정엄마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 ‘깨’를 사돈의 선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찐은 이것을 시아버지에게 드렸고, 시아버지는 깨를 보자마자 “이것 맛없을 것 같다. 한국 것이 더 맛있지!”라고 하셨습니다. 찐은 계속 이렇게 베트남 사람인 것을 무시당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서윤, 여, 베트남)

### 3. 차별 장소별 사례

#### ○ 사적 공간에서의 차별

- 대부분이 가정을 뜻하는 사적 공간에서의 인종차별을 단순한 가족 간 갈등으로 볼 것인지, 인종차별로 볼 것인지, 연구진 내부에서도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가정폭력이 가정 내 문제라고 해서 관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가정 내 인종주의 역시 가족구성원 간의 문제로 간과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례들로 분류함. 사적 공간에서의 인종차별에는 데이트 폭력과 성적 학대도 포함됨.

#### 사례9) 나는 가족 아닌가요?

친구(베트남 여자)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지 6년 되었다. 남편은 장남이고 아들도 태어났다. 친구는 한국말을 잘한다. 시동생도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추석, 설날 때 제사 지내고 맛있는 음식 먹은 후에 가족회의를 한다. 가족회의 때 동서도 함께 하는데 친구만 멀리 떨어져 앉는다. 가족끼리 얘기할 때 다른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앉으라고 한다. 남편 옆에 앉아도 남편도 멀리 가서 앉으라고 한다.

(즈영, 여, 베트남)

## 사례10) 베트남은 못 사는 나라니까 돈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친구 향이 속상하다며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향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지 채 1년이 조금 넘었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향이 전화한 이유는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때문이었습니다.

향의 시어머니가 향에게 “왜 욕실화를 적시냐!”라고 화를 냈고, 향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기에 “아니. 나 몰라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향에게 “베트남은 못 사는 나라니까 돈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만해!”라고 말했다입니다.

향은 이 말에 너무 상처 받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베트남 사람이 모두 돈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서윤, 여, 베트남)



○ 교육 시설에서의 차별

- 교육 시설은 차별이 일어난 공간으로 무려 34건의 사례에서 보고됨.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것 같은 교육 공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종차별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음. 교육 시설에는 영유아보육시설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는 공교육 시설, 학원 등의 사교육 시설, 공적 기관에서의 강연 등이 포함됨.

**사례11) 엄마 나라 말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다문화 인권 수업을 하러 간 어느 초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서 이주민 다문화 인권 강사에게 하신 말씀이다.

“저 아이는 엄마가 베트남인데 베트남 말을 하나도 못하고요, 애는 필리핀인데 애도 필리핀 말을 전혀 못해요.”

(쿠미코, 여, 일본)

**사례12) 중국인과는 같이 안 놀아**

중국 출신 서씨와 11살 아들은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다. 아들은 한국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한국어를 빨리 배웠다. 그래도 한국 아이들처럼 똑같이 하기가 어렵다. 지난주에 바둑 학원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차에서 한 또래 친구가 물었다. 너는 중국인이냐고 물었다. 서씨의 아들이 “응”이라고 대답했다. 바둑 학원 친구는 “우리는 중국인과 같이 안 논다”고 했다. “중국인은 한국어를 잘 모른다”라고도 했다.

착한 서씨의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속상하다고 이야기했다. 서씨는 한국 사회에서 중국 출신 이주민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무시를 당한다고 걱정한다.

(왕약영, 여, 중국)

### 사례13) 다문화 가정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친구들은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초등학교 신학기가 시작 된지 얼마 안됐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교실 수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신 일본 사람이고, ○○○의 어머니는 중국에서 오셨대요. 이런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지요? 우리 친구들 모두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새 학급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담임선생님이 해당 학생을 가리키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특정해서 지적하거나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공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니까 사이좋게 지내줘야 한다는 뜻이 말씀하신 것도 부적절한 지도라 생각된다.

(쿠미코, 여성, 일본)

### 사례14) 교수님 왁, 아프리카 놈들은 모두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해

G씨는 H대학교 유학생이었고 한국에 도착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최근 강화된 법 집행 중 단속에 잡혀 출입국 심사국에서 보석 신청을 거부당하고 우간다로 보내졌다. 나는 그가 적절한 취업 비자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가 학생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

그에게는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벌금을 내야했지만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G씨 역시 벌금을 내려는 의지가 있었다. 교수는 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오히려 아프리카 놈들은 모두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G씨는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도교수에게조차도 “놈”이라고 비하 받았다.

(제임스, 남, 우간다)

## 사례15) ‘다문화가족’,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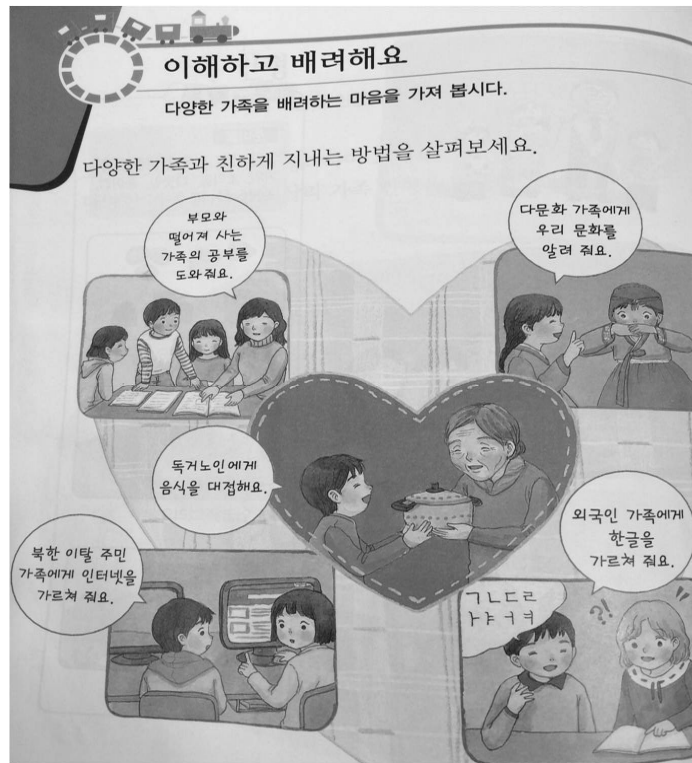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원에 실린 내용이다. 제목은 ‘이해하고 배려해요’이고, ‘다양한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봅시다.’ 하는 것이 교육 목표로 제시된다.

이는 가족의 형태를 단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

‘독거노인’, ‘부모와 떨어져 사는 가족’,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해서 ‘~도와줘요. ~알려줘요. ~가르쳐 줘요. ~대접해요’ 등과 같이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차별적인 관점이 문제다. 선의로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차별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노명계르, 여, 몽골)



○ 대중교통에서의 차별

-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거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서 차별 행위가 관측됨. 지하철과 택시는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감이 모욕감은 더욱 컸으리라 짐작되며, 택시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종주의적인 언행을 방어하거나 반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사례16)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

한국 남자랑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힐끗 보고는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 했다.

베트남 여성과 남편은 일부러 못 들은 척 했지만, 택시 기사가 또 똑같이 물어봐서 남편이 사람이 물건이냐고, 왜 그렇게 물어보냐고 말했다.

택시 기사는 사과하지 않고, 외국사람처럼 보여서 물어본 거라고만 했다.

(즈영, 여, 베트남)

**사례17) 묻지 마 폭행,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니카라구아(Nicaragua) 여성 H씨와 딸(11살)이 집에 가려고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서 있었다. 갑자기 중년의 한국 남성이 H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렸다. 놀란 딸은 울음을 터트렸다.

H씨가 놀라서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H씨의 말을 무시하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H씨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망설였다. 딸은 울고 있고 H씨는 정신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전철역사 안에 가서 도움을 청했다.

남자는 도망가고 없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 했는데 들어 주지도 않았다.

(파올라, 여, 페루)

○ 근린에서의 차별

- 근린, 그러니까 거리나 시장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의 차별 행위도 총 26건이 보고되어 교육시설, 직장, 상업시설과 더불어 차별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에 포함됨. 이유 없는 혐오나 고정관념에 의거한 비하나 모욕, 따돌림과 분리, 위협과 폭행,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대한 부당한 의심 등이 거의 모든 유형의 차별 행위가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사례18) 한국인은 가면 안 되는  
‘다문화’ 축제**

부천시청에서 다문화 축제가 열린 날, 시청 앞을 걸어가고 있던 한국인 가족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저학년 남아) “아빠,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한국인 아버지) “다문화 가정들이 축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가면 안 된단다.”

(지나가던 몽골 이주 여성) “저 축제에 아무나 가도 돼요”

(한국인 아버지) “그래요? 우리도 가도 되는 거예요?”

(노명게르, 여, 몽골)

## 사례19) 코리아! 장사 노!

### 너희 나라 가!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네팔에서 온 남성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할아버지가 남성에게 “너 불법체류자지?”라고 물었고, 남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한국말도 못하면서 무슨 장사를 해! 너희나라 가서 장사해!”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이 안 팔겠다고 그냥 가시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코리아! 장사 노! 너희 나라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 할아버지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만 듣고 네팔에서 한국으로 장가를 온 남성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네팔 남성이 신분증이 없어 한국 아내를 불렀고, 아내도 설명을 했지만 설명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여준 뒤 경찰이 할아버지와 돌아갔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라면 양쪽의 말을 다 들어줘야 하는데 아내의 서류를 보고서야 믿어주는 것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서윤, 여, 베트남)

## 사례20) 모국이 좋아요?

### 아니면 우리나라가 좋아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이라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나는 한국인으로 부터 한 두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모국이 좋아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라고 대답할 경우에는 “그럼 그렇지, 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잖아요.” 등의 반응이 돌아온다.

“모국이 좋아요.”라고 대답할 경우에는 “그럼 왜 여기 왔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살면 되지.” 등의 반응이 돌아온다.

한국에서 산 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끔 듣는 이야기다. 사실 어떤 대답을 해도 한국인들로부터 무시당한다. 한국이라고 말하면 출신국을 비하하고, 모국이라고 말하면 말한 이주민을 비하하기 때문이다.

(노명게르, 여, 몽골)

**사례21) 외모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봐요,  
우리 말 할 줄 알아요?**

부천 남부역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휴일 오후 30대 후반의 이주여성이 두 명의 자녀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한국 여성 종교인이 말을 걸어 왔다.

(종교인) “안녕하세요. 어머! 보니까 저기 외모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렇지요?”

(이주여성) “저 제가 좀 바빠요.”

(종교인) “아직 버스 안 왔잖아요. 발음을 들으니까 외국사람 맞네. 나라는 어디예요? 베트남? 태국? 아니면 중국? 우리나라 말 할 줄 알아요? 아이들도?”

(이주여성) “아, 네”

(종교인)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했어요? 애들 아빠는 한국 사람이예요?”

버스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그것도 자녀들 앞에서 ‘외모가 다르니’, ‘한국말을 할 줄 아느니’ 등 무례한 질문 공세를 퍼부어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명백한 무시에 해당한다.

(김지연, 여, 중국)



○ 미디어에서의 차별

- 외국인의 한국어 발음 희화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외국인 피의자의 신상 공개, 외국인에 대한 분리주의 등의 차별 행위가 미디어에서 관측됨.

**사례22) 외국인 피의자만 신상 공개**

한국 사람을 살해한 외국인이 체포되었다며 텔레비전 뉴스에 얼굴이 공개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살인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살인 용의자들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한국인 피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인권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외국인 피의자들은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대중 매체에 얼굴이 바로 공개되는 것인지 안타깝다.

(현지영, 여, 베트남)

**사례23) 맥락 없이 결과만 보도되면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베트남 선원이 배에서 한국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베트남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다.

베트남 뉴스에서는 선원이 힘든 일을 했고, 한국인 선장이 먼저 베트남 선원의 손목을 칼로 다치게 했다고 나왔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 뉴스에서는 그런 내용은 보도가 되지 않는다. 단지 베트남 선원이 술을 많이 마셔서 한국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만 계속 보도가 된다.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만 뉴스 보도가 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은 술 먹고 아무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응웬, 남, 베트남)

○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의 차별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고정관념과 모욕, 반말 등의 무시, 불친절 등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차별 장소로 보고됨. 심지어 피부색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는 곳도 있었음.

**사례24) 외국인 환자는 왜 푸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우즈베키스탄 여성 에모씨의 아버지는 한국의 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항상 병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드셨다. 우연한 기회로 다른 사람들은 병원 내부에 있는 약국에서 처방을 받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원 내 약국의 약제비는 병원 밖에 비해 훨씬 저렴했다.

병원에서 병원 내 약국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처음엔 의사 전달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졌더니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발뺌만 할 뿐 그 어떤 책임과 사과도 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의사들은 불친절했다. 진료 시 의사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말을 느리게 하면, “다음이요, 나가서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기 일쑤였다. 어떤 소아과에서는 에모씨가 어린 아들의 증상을 이야기하려니까 말을 막으면서 “가만히 있으세요. 당신이 의사면 병원에는 왜 온 거예요?” 라며 인상을 찌푸린 적도 있었다.

이주민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돈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으려 간 의료 소비자일 뿐인데, 병원의 처우는 너무나도 불평등해보였다.

(오은희, 여, 중국)

## 사례25) 한국어 되는 사람 데리고 와!

중국 출신의 이주 여성 이모씨는 장기간의 불임 끝에 산부인과를 찾았다. 초기 정보가 없어 찾아 간 병원에서 시험관 가능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안내 데스크에 시험관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어눌한 한국어 탓에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 데스크 직원은 답답했는지 “한국어 되는 사람 데리고 와”라고 반말로 요청했다. 이씨는 마음을 추스르고 시험관이 가능하냐는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다시 보여드렸다. 그러자 직원은 “시험관 엄청 비싸요. 돈 있어?” 하며 다시 반말을 하였다.

이씨는 서러운 마음에 출근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데스크 직원과 통화를 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모씨는 직원의 반말과 더불어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할 사적인 정보를 주변인들에게 다 노출시켰다는 사실이 무척 수치스러웠다.

(오은희, 여, 중국)

## 사례26) 똑같은 병원비 냈거든요, 진료 똑바로 해주세요!

제 피부는 건성입니다. 요즘 잡티와 피부 주름이 갑자기 많이 생겨 걱정된 마음에 피부과 진료를 받기 위해 피부전문병원에 갔습니다.

치료실에 들어서자 의사선생님이 왜 왔냐고 물어봤고, 저는 저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저를 다시 보더니 “어디서 오셨어요?”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은 “베트남은 햇빛이 되게 강한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의사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컴퓨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베트남은 ‘원래 햇빛이 강해서 피부가 안 좋다’고 대충 설명하며 젊으니 별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온지 10년이 다 되었는데 베트남 햇볕 때문에 피부가 안 좋다는 말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피부상태를 카메라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이를 요청했지만 의사선생님은 설명도 하지 않고 손도 안 만져 보고 “눈으로 봐도 나이가 젊어서 피부가 괜찮다”는 말만했습니다. 병원비를 냈는데 의사선생님의 진단은 “괜찮다.”였습니다.

제가 요청한 진료에 대해서 진료 받을 수 없었고, 진료비만 냈습니다.

(현지영, 여, 베트남)

○ 상업시설에서의 차별

- 상업시설에서의 차별 행위는 총 27건으로, 차별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 가운데 한 곳으로 확인됨. 외국인이 고객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을 유치하여 영리를 취득하는 것을 존재 목표로 하는 이러한 시설에서조차 외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여겨짐. 바가지, 무시, 모욕, (의상 입어보거나 보석 구매를 위한 둘러보기, 식당 입장) 거부, 반말, 성희롱 등의 차별 행위가 망라적으로 관찰됨. 그 중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할인 행사)도 당사자들에게는(무시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로 인지됨.

**사례27) 외국인에게는 물건 팔지 않아요**

친구들(south american)과 같이 쇼핑 하러 옷가게에 들어갔다.

외국인 A씨는 주인한테 가격을 물어봤다. 주인은 한국 사람들은 할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평에 있는 다른 가게에 들어갔더니 외국인한테 말은 안하고 손으로 엑스(x) 모양을 하면서 No No No 했다.

(파올라, 여, 페루)

## 사례28) 반말, 모욕, 바가지, 손님이 왕 맞나요?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도모씨는 핸드폰 구입을 위해 핸드폰 매장에 갔다. 직원은 도씨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한국말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것도 반말로.

핸드폰이 꼭 필요한 도모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랬더니 직원이 6개월간 월정액 12만원 상당의 기본 요금을 약정해야만 개통이 가능한 상품을 소개해주었다.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 도모씨는 신랑에게 전화를 했다. 신랑은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직접 가게로 왔다. 한국인 남편이 출현하자 직원은 바로 태도를 바꾸며 다양한 요금제를 설명했고 할인 조건들도 소개해 주었다.

결국 도모씨는 5만원 요금제로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었다.

(오은희, 여, 중국)

## 사례29) 사우나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예요

어느 흐린 날 저녁, 흑인과 백인, 한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세 사람의 친구들이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우나에 가기로 했다.

그들은 사당동에 있는 사우나에 갔다. 탈의를 하고 욕조로 향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중년의 한국 여성 두 명이 그들에게 다가와 흑인은 목욕탕 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한국인 친구가 화를 내며 왜 그런지를 물었다. 그러자 중년여성들은 관리자와 함께 나타났다. 중년여성들은 왜 흑인 여성을 사우나에 입장시켰냐면서 관리자에게 항의하고 물이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욕탕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가 그 중년여성들에게 화를 냈지만 중년여성들은 막무가내로 관리자에게 계속 항의했다. 관리자는 중년여성들에게 그들이 인종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사우나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상처받은 흑인 여성은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이 사우나에서 나가겠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크게 상처받고 슬펐다. 그들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대답 없는 질문을 품고 떠났다.

(크리스티나, 여, 라이베리아)

○ 제도 공간에서의 차별

- 제도 공간에서의 차별 행위도 무려 20건이나 보고되어 우리 연구진을 놀라게 했음.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정도로 ‘제도적 인종주의(institutional racism)’가 공공 부문에 만연되어 있으리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규모임. 인종주의적인 차별이 행해진 공적인 공간에는 학교, 관공서, 의료기관, 법무부를 비롯한 여가부, 문화부 등의 정부부처, 주민센터, 경찰, 지자체 등이 포함됨.

**사례30) 나는 밥 먹고 할 일 없어 주제 파악 못하고**

**가지가지 하는 외국인 국적 취득 희망자가 아닙니다.**

중국 출신 30대 여성 김모씨는 한국 귀화(국적 취득)시험을 치른 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자신감에 꼭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으로 불합격이었다. 결과에 낙담하고 있다가 문득 시험장에 김모씨와 같은 이름의 수험자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났다. 혹시 하는 마음에 법무부에 결과를 확인하러 갔다. 오전 9시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해서 침착하게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던 담당자는 “당신같이 실력도 없고 떨어질 만하니까 떨어진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설친다.”라며 모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번거롭겠지만 꼭 한 번만 확인을 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했다.

담당자는 김모씨의 부탁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그리고 안됐다는 듯 쫓쫓 혀를 차기도 했다. 담당자의 인권침해적인 언행이 너무나 불편해 청와대의 신문고에 사정을 올린 후 신문고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곧바로 법무부 담당자는 불합격한 답안지를 가지고 나왔다. 그 땀 이미 오후 5시가 다 되어 있었다. 답안지를 확인시켜주면서도 담당자는 “참 가지가지 한다.”면서 “밥 먹고 할 일이 없냐?”고 모욕을 멈추지 않았다.

답안지를 확인해본 결과, 김모씨의 생각이 맞았다. 김모씨는 합격이었고, 김모씨와 같은 이름의 수험생이 떨어진 것이었다. 그때서야 담당자는 컴퓨터 인식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만 얘기를 했다. 사과는 전혀 없었다.

(오은희, 여, 중국)



### 사례31) 나는 도망가려고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15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B씨는 남편과 동행하여 이중국적 취득 인터뷰를 받았다. 인터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B씨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심사자) “이중국적을 왜 취득하려고 하세요?”

(결혼이주여성 B씨)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예요. 엄마가 한국 국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사자) “한국 국적 따면 도망가려고요?”

(결혼이주여성 B씨) “네???”

(쿠미코, 여, 일본)

### 사례32) 나는 일본 국가 대표 선수가 아니에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열린 ‘2015 경북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에서 경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사녀’ 회원들은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을 펼친 바 있다.

이번 축제의 취지는 경북에 거주하는 1만 3천여 명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이 어울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한마당이다. 다문화 가정 가운데는 일본 출신의 부모를 두는 경우도 있다.

그들 자녀들은 학교에서 한일 국가 간의 역사 문제가 다뤄질 때 편견의 타겟이 되고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 축제에서는 참가 대상자의 출신 국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는 자제해야만 한다.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은 화합이 목적이라면서 ‘한국’의 입장만을 강조한 이벤트였다. 일본 출신 이주여성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손에 일본 국기는 없다.

(김지연, 여, 중국)

### 사례33) 애국심 감별은 축구 응원으로?

2015년 5월 17일자 각종 언론에는 롯데 그룹 회장의 국정 감사 진술이 보도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 회장은 “롯데는 한국 상법에 따른 기업이고, 세금도 한국에 내고 있다”며 “직원도 한국인인 기업”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한국 국적을 계속 갖고 갈 것인가”라고 묻자, 신 회장은 “네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축구 한일전에서 한국을 응원하는지” 묻자, 신 회장은 웃으며 “지금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여, 중국)

### 사례34) 우간다에서 왔다고 면허위조범은 아니죠

우리는 이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경찰은 우리를 두 번 세웠다. 우리는 경찰과 반대편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따라오기 위해서 방향을 바꿨다. 경찰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물었고 우리는 우간다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우리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내 운전면허증은 한국면허증이었으나 내 이름과 중간 이름은 이니셜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 이유로 경찰들은 면허증이 위조된 것을 의심했다.

그들의 시선으로 우리는 한국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거지로 보는 것 같았다.

(제임스, 남, 우간다)

### 사례35) 경찰관님, 규칙은 공정해야죠

A씨는 Chodang에 살고 있는 학생이다. 그는 4년 간 학생이었지만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총 약 8년 정도 된다.

어느 날 그가 슈퍼마켓을 가는 길이었다. 그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자 주변에 있던 경찰이 갑자기 그를 멈춰 세웠다. 경찰들은 그에게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직후 같은 자리에서 한국인 네 명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았는데 경찰은 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 했지만 경찰은 그에게 그들에게 직접 잘못된 점을 지적하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그가 규칙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취해진 조치가 공정한 것은 아니었다. 경찰은 그에게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옳은 말이지만 경찰들은 그 규칙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제임스, 남, 우간다)

○ 종교 및 엔지오 공간에서의 차별

-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의 종교적 편향과 차별, 이주민 지원단체 안에서의 분리주의, 종교 기관 안에서의 피부색 차별 등의 사례가 보고됨.

### 사례36) 한국이 위험해

청주문화재단에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이슬람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 기획했다. 그런데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엄청난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 재단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평생 저주받도록 기도한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는 류의 담당자에 대한 인신공격도 자행되었다.

그런데 항의 전화를 한 기관 중 하나는 모지역의 기독교 관련 이주민지원단체였다. 그 단체는 ‘이슬람교가 세력을 넓히면 한국이 위험하다’며 ‘현재는 다문화라고 하여 친화적인 분위기지만 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는 내용의 항의를 했다.

(쿠미코, 여, 일본)

### 사례37) 아프리카 사람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M씨(우간다)는 안산에 있는 우리 교회의 교인이다.

그는 한국에 와서부터 계속 이 교회에 출석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나 다른 교인들의 태도 때문에 교회 출석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는 교회에서 심각한 인종차별을 느꼈다.

그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할 때 마다 그가 앉은 벤치 옆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다.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며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대우 받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읽고 쓸 줄 모른다는 듯이 대우했다.

(제임스, 남, 우간다)

○ 직장에서의 차별

- 직장에서의 차별 행위는 총 31건으로 교육시설 다음으로 차별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확인됨. 고정관념에 의거한 모욕, 출신 국에 따른 업무 능력 비하, 처우에서의 불공정과 불평등, 외식 등에서의 따돌림, 한국어 능력이나 말투에 대한 무시, 폭언 및 협박, 직원 채용 시 차별, 출신국가별 차별, 임금 차별과 임금 체불, 국적취득자와 비국적 취득자 간의 차별 등이 포함됨.

**사례38) 한국 국적을 취득했나요?**

**그래도 당신은 외국인이에요**

중국 출신 한씨는 이미 한국에 온 지 7년이 되었다.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그러나 한씨는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인이 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하자마자 말투가 틀려서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한씨는 힘들게 한 회사에 들어갔다.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켜놓고 일을 했다. 작업장에 여직원 8명이 있었는데 에어컨 바람이 항상 한씨가 서 있는 방향으로 불었다. 한씨는 춥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렸지만 담당 반장님은 또 한씨를 향하여 에어컨을 돌렸다. 반장님은 이렇게 놓아야만 전직원이 다 시원하다고 했다. 며칠 후에 새로운 직원이 왔다. 한씨한테 다른 일을 시켜 자리를 옮겼다. 새로 온 직원이 한씨가 서 있는 곳에 섰다. 신입 직원이 바람이 너무 세다고 반장님한테 말했다. 반장님은 바로 에어컨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한씨는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난 지 말로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외국인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처사였다. 왜 한국인 직원이 오자마자 춥다고 해서 에어컨 방향을 바꾸어 주나? 한씨는 외국인들은 공장에서 항상 일을 제일 많이 하고 힘든 일도 항상 외국인이 한다고 했다. 불량품이 나올 때 분명히 한씨가 한 것이 아니라도 한씨가 한 것이라고 했다. 담당 반장님은 한국 직원한테는 욕하지 않고 한씨에게만 욕을 했다. 아마 한국 회사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왕약영, 여, 중국)

### 사례39) 외국인이 한국에 왔으니 그냥 말 잘 들어

이씨는 중국출신 결혼이민여성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일용직으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용역업체의 담당자는 구직자 10명을 데리고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회사의 담당반장님은 구직자들을 보고 “한국어 모르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한국으로 왔으니 그냥 말 잘 들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시키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도 했습니다.

이씨는 그때 한국에 온 지 6개월 밖에 안 되어 한국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만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왕약영, 여, 중국)

### 사례40) ‘원숭이’랑 같이 잘 수 없어

몇 주 전 라이베리아 커뮤니티 멤버 중 한 사람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의 직장은 아시아계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높은 곳이며 그는 그 회사에서 유일한 흑인이었다. 한국인 상사는 그에게 다른 외국인노동자들과 달리 매우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사람들은 그를 ‘원숭이’라고 부르며 놀리고 이리저리 밀쳤다. 그는 아픈 아내를 돌보기 위해 반드시 돈을 벌어야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뎠다. 그는 작업장의 수면 공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밤에 그와 수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여서 그는 휴게실 복도에서 잠을 자야 했다. 동료들은 매번 그가 직장을 떠날 것을 종용했으며 상사는 그를 비웃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계약된 임금을 정확하게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는 일하는 기간 내내 우울해했으며 마침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커뮤니티와 연계되면서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게 되었지만 이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인종차별이었다.

(크리스티나, 여, 라이베리아)

## 4. 차별 행태별 사례

### ○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한 차별

- 고정관념에 의거한 차별은 총 32건으로 무시, 비하, 모욕, 혐오 등의 차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관측된 차별 행태임.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고정관념에는, “가난하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시끄럽다(나쁜 말 한다)”, “일을 못 한다”, “이기적이다”, “더럽다”, “게으르다”, “도망갈 것이다”, “한국어를 잘 못할 것이다” 등이 포함됨.

### 사례41) 선생님, 저를 도대체 왜 부르신 건가요?

부천시 모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출신의 30대 이주민 강사가 다문화 출장 수업을 하러 갔다. 수업이 시작되고 이주민 강사가 출신 국가 및 이름을 소개하자, 중년의 담당 교사는 느닷없이 이주민 강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교사)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같은 혜택(국민건강보험 등)을 못 받겠네요?”

(이주민 강사) “건강보험은 있어요.”

(교사) “왜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왜 혜택을 받아요?”

(교사) “이런 수업은 교육을 받고 하는 거지요?”

(교사)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지요?”

(이주민 강사) “사람마다 다르지요. 모든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대학에 안 가는 사람이 많잖습니까?”

(교사)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대학교를 졸업해요. (학생들을 향해) 애들아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 대학교를 나오는 거야. 알고 있지?”

(교사) “일본은 결혼식에 하얀 기모노를 입는데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얀 한복을 입지. 이주민 선생님!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 때는 색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는데 왜 이런 한복을 입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쿠미코, 여, 일본)

#### 사례42) 한글 이름, 꼭 있어야 하나요?

나의 아기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어떤 한국인 지인이 내게 전화를 하셨다. 그리고 물으셨다.

“애기가 초등학교에 신청 되냐? 어떻게 되냐? 누가 신청 도와주었냐? 그리고 신청 때 엄마, 아빠 이름은 썼나요? 엄마 아빠 베트남 이름으로 썼나요? 한국 이름으로 썼나요?”

“엄마, 아빠 베트남 이름으로 썼어요, 왜요?”라고 나는 반문했다.

“아이구, 왜 한국 이름으로 안 써요?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아이 같이 안 놀아요.” 지인이 걱정하며 안타까워했다.

(즈엉, 여, 베트남)



### 사례43)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전부도 아닙니다.

이번 화요일 오후에 \*\* 시장 쉼터 안에 있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려고 아래 층 커피숍에서 잠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옆자리 50대 아줌마 3명이 계셨습니다. 한 명이 베트남에 금방 여행을 갔다 왔는지 베트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처음엔 유명한 하롱베이가 너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호텔 근처에 살고 있는 베트남 아저씨들이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런가봐 베트남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옆 친구가 “맞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아줌마는 한국에 온 지 7년 된 베트남 며느리가 있는 이웃 여성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일을 안 하고 놀면서 베트남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려고 한국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계속 투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아줌마는 베트남을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정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응웬, 남, 베트남)

### 사례44) 돈만 받고 도망간다면요? 그렇지요?

부천시에서 어느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 기사는 50대의 한국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택시기사)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요?”

(이주여성) “베트남이에요.”

(택시기사) “아, 베트남! 우리 나라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저기 있잖아요, 베트남 신부들은 돈만 받고 도망간다면요? 그렇지요?”

드물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이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처음 보는 승객인 이주 여성 앞에서 노골적으로 그런 편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김지연, 여, 중국)

#### 사례45) 이름 안 쓰면 다 한글 모르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열린 중고등학생을 상대하는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의 연수 중에 있었던 일이다. 17명의 한국인과 2명의 이주여성이 참석했다.

그 곳에서 서로 거주지가 가까운 참석자끼리 자주 만나자면서 소모임 운영을 위해 종이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돌리기 시작했다. 이주여성 두 사람은 소모임 까지 참석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름과 연락처를 안 적었다. 그랬더니 소모임 담당자인 한국인 여성이 “왜 이름을 안 쓰세요? 아, 한글 쓸 줄 모르세요?”라고 말했다.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못 쓰는 이주민이라면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 자원봉사 지원서 자체를 제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지원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한국인 여성이 “이름을 한글로 쓸 줄 모르냐”라고 물은 것은 이주민의 학습 능력을 비하하는 고정관념의 산물일 것이다.

(쿠미코, 여, 일본)

○ 무시, 비하, 모욕, 혐오에 의한 차별

- 무시, 비하, 모욕, 혐오 등의 차별 행태는 총 53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됨. 대체로 무시, 비하, 모욕, 혐오라는 차별 행위는 ‘외국인인 주제에’ 혹은 ‘한국말도 못하는 주제에’, 혹은 ‘피부색도 어두운 주제에’, 또는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 출신인 주제에’ ‘네가 \*\*\*을 할 수 있겠어? 그런 걸 해봐야 어디다 써먹겠어?’류의 구조로 이루어짐.

**사례46) 다 알아듣습니다, 말조심 하세요**

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있을 때 한 한국인 중년 여성이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외국인이 왜 1종을 배워? 2종을 배우지”

한국인 여성은 몇 차례나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

“괜찮아요. 필요해서 1종 배우는 거예요.”

베트남 이주여성은 1종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2종보다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어 1종을 배우는 것이라고 ‘한국어’로 설명해 주었다. 이주여성의 한국어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년의 한국 여성은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1종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1종을 배워.”라며 그릇된 자기 생각을 말했다.

이주여성이 한국어로 충분히 1종 교습을 받는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한국 여성은 처음 보는 이주여성을 향해 “우리나라 말을 모른다. 이해를 못한다.” 라는 자신의 편견을 고수했다.

운전 학원의 강사도 비슷했다. 이주여성이 운전이 미숙할 때

“아이씨. 외국인이면 쉬운 걸 하지 왜 어려운 걸 해서... 잘 하지도 못하면서”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주여성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강사에게

“베트남이 무슨 1종이야. 베트남 때문에 짜증난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현지영, 여, 베트남)

#### 사례47) 당신은 돈 받고 결혼했나요?

페루 출신의 30대 여성이 한국 여성에게 자신은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고 말했다. 그 한국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해왔다.

“너 가족 돈 많이 받았어? 돈 얼마 받았어?”

“아니요, 왜 우리 가족한테 돈 줘요?”

라고 페루 출신 이주여성이 반문하자 한국 여성은

“아니야, 베트남, 중국, 몽골 사람들 결혼하면 여자 가족들한테 돈 줘, 원래 그러는 거야”라고 강변했다.

(파올라, 여, 페루)

#### 사례48) 물을 흐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몽골 출신 이주여성 진모씨가 딸과 함께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몽골어 대화를 듣던 대기실에 있던 중년의 한국 여성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그럴 거면 니네 나라 가서 떠들어. 재수 없게 이 병원 안 되겠네. 물 흐려놔서”라고 말했다.

자신의 자녀에게는 저런 애들이랑은 어울리면 안 된다고도 하였다. 한국에서 자란 진모씨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사실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건 아니었다.

놀이터에서 놀 때도 몽골은 물이 없어서 샤워를 안 해 더럽다고 근처 가면 안 된다고, 같이 놀면 안 된다고 하는 탓에 상처를 받은 게 이만저만 아니다.

진모씨는 너무 화가 나고 딸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항의를 하거나 대응을 하게 되면 더욱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다.

(오은희, 여, 중국)

#### 사례49) 여기 물건은 비싸서 당신 같은 외국인은 살 수 없어요.

라이베리아 출신의 30대 이주여성 C씨는 딸의 생일날 뭔가 특별한 것을 선물하기 위해 고민 중이었다.

그녀는 딸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해주기로 결심하고 생일 전날 딸에게 선물을 사러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C씨와 딸은 마음에 드는 보석 가게를 발견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그녀들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길을 잃은 외국인으로 간주, 누구를 찾는지 물었다.

C씨가 “목걸이를 사고 싶다”고 하자 주인은 “여기 물건은 매우 비싸서 당신이 구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웃으며 “당신 같은 외국인이 어떻게 여기서 금을 살 수 있겠냐?”고 말했다. C씨는 “내 나라에서 금은 아무것도 아니며 심지어 강둑의 모래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야 주인은 물건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주인은 C씨가 딸을 위해 금목걸이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라 했다.

(크리스티나, 여, 라이베리아)

#### 사례50) 외국인들은 다들 이런 식, 내려

몽골인들 몇 명이 공항 가는 버스를 탄 후 잔돈이 없어서 버스 요금으로 5만 원 짜리를 지급했다. 그랬더니 50대 남성 버스 기사가 욕을 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버스 타는 사람이 잔돈을 가지고 다녀야지” 하면서 “외국인들은 다들 이런 식”이라고 투덜거렸다. 그러면서 “돈 없으면 내리라”고 하였다.

비행기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내리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됐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잔돈이 없다고 했다면 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노밍게르, 여, 몽골)

○ 기회와 처우에서의 불평등

- 기회와 처우에서의 불평등을 강요한 차별 행위는 총 24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차별행태 가운데 하나로 확인됨.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 혹은 한국어 구사력에 따른 구직 기회 자체의 박탈, 임금 및 사례에서의 차별, 직무 배치에서의 차별 등이 포함됨.

**사례51)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지**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D씨는 열심히 미용을 배워서 미용실에서 일한지 1년이 되었다.

어느 날 한국인 직원이 새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D씨 보다 기술이 떨어지고 일을 잘 하지 못했다. 그런데 미용실 원장은 “그 친구를 먼저 가르쳐주고 너는 나중에 가르쳐줄 테니 일단 그 친구 옆에서 네가 도와주라”고 했다. D씨가 경력도 많고 일도 잘하는데 새로운 신입 직원을 돕고 오히려 그의 밑에서 일해야만 한다.

(장서윤, 여, 베트남)

**사례52) 실력보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녀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교사 자리에 고용되지 못하였다.

학교는 그녀에게 학부모들은 백인 또는 100% 미국인을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영어를 잘 한다고 믿는데 그녀는 그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십대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받았다.

(크리스티나, 여, 나이베리아)

○ 폭행

-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은 3건으로 보고됨. 그러나 이유 없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억울함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185건 가운데 3건이 신체적인 폭행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심각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폭행의 심각성은 지하철과 근린 등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음.

**사례53) 중국말 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해야 하나요?**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인 류씨는 한국에 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장을 보러 갔다.

어떤 반바지가 마음에 들어 얼마냐고 물었더니 사장은 만원이라고 했다. 류씨는 “깎아주세요”라고 했다. 주인은 류씨의 어눌한 발음을 듣더니 “안 판다”라고 했다. 류씨는 바지를 내려놓으며 중국어로 “안 팔면 되지 왜 큰소리를 치느냐”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할 만한 한국어 실력이 아직 못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장은 류씨의 중국어가 욕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이미 걸어가는 류씨를 향해 바지를 던졌다. 그리고 류씨에게 바지를 주으라고 시켰다.

류씨가 바지를 주워 갔다 주는 순간 옷가게 사장은 마네킹으로 류씨를 때렸다. 류씨가 사장을 밀치자 사장은 류씨의 뺨을 때렸다. 덩치 큰 사장에게 구타당한 류씨는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주변 사람 가운데 누군가 119를 빨리 부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사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류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한 후에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

사장은 류씨 구타 사실을 부인했다. 주변 상인들도 사장의 편을 들었다. 지나가던 사람들 대부분은 류씨가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증언을 해주지는 않았다. 결국 사장이 류씨의 병원 치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류씨는 너무나 억울해서 며칠 동안 계속 울기만 하였다.

(왕약영, 여, 중국)

## 사례54) 조심하세요,

### 층간 소음 항의하면, 칼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한 콜롬비아가족(남편G. 아내/N40대. 자녀10대-남자)이 서울의 한 3층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족은 1층에 살았고, 2층에는 주인아들, 3층에는 주인이 살았습니다.

2층에 사는 아들이 자주 술을 마시고 밤1시~3시 사이에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쿵쿵 소음을 내서 가족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말을 못해서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주인 집 아저씨께 전화해서 아들이 밤에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주인아저씨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이틀 후 아들이 술을 마시고 와서 G씨 집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들겼습니다. G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아내 N씨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고 있었더니 2층 남자가 칼로 문을 찔렀습니다.

G씨 가족은 너무 무서워서 대사관 직원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주인집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은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콜롬비아 가족은 며칠 후 두려움에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파올라, 여, 페루)



○ 따돌림과 분리

- 따돌림과 분리라는 방식의 차별 행위도 22건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별 가운데 하나로 확인됨. 따돌림과 분리라는 차별 행위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임. 한 가지는 배타적인 용어가 상용화됨으로써 담론적이며 구조적인 따돌림과 분리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임(다문화와 비다문화, 다수자와 소수자 등). 또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따돌림과 분리라는 차별 행위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따돌림과 분리라는 차별 행위가 담론적이며, 세대를 통해 전승되는 경우, 매우 우려할 만한 결과들이 전망되므로,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요청됨.

**사례55) 조금 다른 옷 주의보,**

**친구들에게 따 당하고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S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중도입국청소년이다. S는 입국 후에 이슬람 사원의 종교지도자인 아빠와 함께 살았다.

그녀는 한국어를 빠르게 익혔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무슬림 종교지도자의 딸인 그녀는 항상 히잡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리고 아빠 때문에 히잡을 쓸 수밖에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히잡 쓰는 걸 원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 친구들이 히잡을 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히잡을 쓴 S에 대한 한국 친구들의 차별은 고학년이 될수록 더욱 심해졌다. S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낄 정도였다. 또래 아이들은 히잡을 착용한 S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며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쓰고 있는 히잡을 검은 베일이라고 불렀다. 중학교를 시작한지 몇 달 후에 S는 아빠에게 학교를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결국 S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머물며 부모를 돕고 있다. 그녀는 슬픔과 수치심에 쌓여있었다.

(크리스티나, 여, 라이베리아)

## 사례56) 특별 할인 반감지 않아요

가정의 달 부천 ‘웅진플레이 도시’는 ‘다문화 다행복 데이’라는 슬로건으로 다문화가족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몇 해 동안 매년 5월쯤 날아오는 다문화가족 특별 할인행사 안내를 보면서 굳이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지 불편한 마음이 든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가정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용하고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들이 때때로 다문화가정을 대상화하거나 무조건 퍼주기 식의 시혜주의적인 프로그램으로 귀착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의 선주민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또 다른 선입견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업이 사회공헌 측면에서 일부 혜택을 마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한다.

(노명게르, 여, 몽골)

가정의 달 웅진플레이도시  
**다문화 다(多)행복 DAY**

늘면서 크는 Kids SPA 카즈스파 NEW OPEN

워터파크 자유이용 + 스파이용	40,000원 → 1인 12,000원
스노우파크 (타임권/눈썰매/아이스크림 체험)	16,000원 → 1인 8,000원
패키지 (워터파크+스파 자유이용 + 눈썰매+아이스크림 체험)	56,000원 → 1인 17,000원

- 행사기간 : 2016년 4월 28일 ~ 5월 15일까지
- 행사대상 : 4인 이상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와 동일 세대원
- 이용방법 : 휴대문 / 이메일 예약 (예약자명, 예약인원, 방문일자, 연락처) 후 이용 (방문 2일전까지 예약가능)
- 휴대문 예약 : 010-4891-7789 문자, 카카오톡, 라인 ID: playdocl

woongjin Play City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 | www.playdocl.com  
\*담당자 연락처: 단체예약팀 정경우 과장 010-4891-7789

### 사례57) 야, 너네 엄마 외국사람 맞지? 무슨 사람이야?

저는 결혼 이주여성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아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3학년이고 막내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7살 재롱 잔치 날, 저한테 “엄마, 예쁘게 하고 와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예쁘게 하고 가야 돼?”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엄마 외국 엄마라고 놀려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학년 때 제가 몇 달 동안 데려다 주었는데 어느 날 “엄마, 오늘부터 혼자 갔다 올게요! 엄마 안 데려다 줘도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떤 친구랑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들에게 “야, 너네 엄마 외국사람 맞지? 무슨 사람이야?”라고 물었습니다. 제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몰라” 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두고 가 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무슨 사람이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사람이라니 그런 말은 없어. 물어보고 싶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라고 물어 봐야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장서운, 여, 베트남)

○ 거부

- 거부는 총 17건 보고됨. 결코 적지 않은 빈도임. 상점의 출입 거부, 옷가게에 서의 입어보기 거부, 교육시설에서의 입학 거부, 회원가입 거부, 신용카드 발급 거부, 대출 거부, 수혈 거부 심지어 입국 거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사회 공간에서의 외국인 거부 행위가 보고됨. 심각한 것은 이러한 거부 행위의 피해자 가운데는 국적취득자 곧 이주배경을 가진 법적인 한국인도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임.

**사례58)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면 유치원도 못 가나요?**

필리핀 출신의 한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그 지역에서 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했다.

그녀의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그 유치원에 찾아갔다. 유치원 원장은 인사를 건네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그 여성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고 어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말했다. 그러자 원장은 만약 우리가 ‘혼혈인’을 받게 되면 많은 한국인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여성은 매우 화가 난 채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

그녀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어떻게 유치원에 갈 수 있는지 걱정스러웠다.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유치원에 찾아가 원장을 만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원장을 만난 남편은 자신의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원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원장은 심지어 그 남성에게 ‘당신은 한국의 수준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비하했다. 그는 화가 난 채 유치원을 나왔고 그들의 자녀를 거부한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결국 그 부부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가족은 이번 연휴에 아내의 나라로 이민을 가기로 계획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여, 라이베리아)

### 사례59) 모든 피는 같은 색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U씨가 수혈하려는 것을 적십자 직원이 거부했다.

U씨는 그가 흑인이며 동시에 나이지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수혈하는 것을 거부당했다. 적십자 직원은 그가 유색인종이지만 아프리카 출신이 아니면 수혈을 할 수 있는 듯이 표현했다.

U씨가 나이지리아인임을 밝히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U씨는 흑인이면서 동시에 아프리카인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다른 색깔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십자 직원들은 U씨의 혈액 색깔에 대해서 궁금해 하며 서로 질문했다고 한다. 특정 지역 출신의 유색 인종이라고 해서 수혈하는 것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제임스, 남, 우간다)

## 사례60) 귀화하셨나요?

**그래도 대출 안 됩니다! 당신의 외모는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미국인인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서 한국으로 이주해 왔다.

둘은 결혼했고 그녀는 한국을 제2의 집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외국인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특히 한국인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열심히 익혔다. 그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결국 그녀는 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고 은행 계좌를 열면서 차츰 다른 한국 사람들 눈에는 그녀가 ‘여전히 외국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행에서는 그녀가 ‘한국 태생이 아니어서 그녀가 필요한 만큼의 사업 자금을 대출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은행은 그녀가 ‘한국 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을 위해서는 여전히 특정한 서류에 남편 사인을 요구했고 서류가 준비되어도 대출신청이 받아들여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을 집으로 느끼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가족을 위해 일하면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외국인으로 대했다. 그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태도와 차별적인 대우에 자신이 한국인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이 후회되었다.

(크리스티나, 여, 라이베리아)

## 사례61) 외국인 등록증 있어요?

### 없으면 회원 가입 안돼요!

점심시간 쯤 구리 시장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갔다. 머리 염색약을 골랐고 계산하기 위해 늘 그랬던 것처럼 다른 손님 뒤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

화장품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내 앞 사람에게 계산을 해주면서 회원등록을 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계산할 때 “저도 회원등록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주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외국인 등록증 있어요? 없으면 못 만들어 줘요!”라고 화를 내며 말했다.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말을 하려 했으나 무조건 가입이 안 된다는 식으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내가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여줬고, 그때서야 주인은 “아! 주민등록증이네요.”라고 반갑다는 듯 환한 표정과 미소로 나에게 말을 하고 내 앞에 손님처럼 나에게 설명해주고 회원가입을 도와주었다. 아까 줄을 섰던 것도 나고, 지금 회원가입을 하는 것도 나인데 주인의 달라진 태도가 이해가 안 될 정도였다. 화장품 가게 주인은 다른 가게보다 매우 친절하다.

그렇게 친절함 화장품가게 주인이 나를 외국인라고 생각해서, 또 미등록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 불친절하게 한 태도에 몹시 화가 났고, 차별이라고 생각했다. 미등록 외국인과 외국인, 한국인은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화장품을 구매하지만, 회원 가입과 태도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다.

(현지영, 여, 베트남)

○ 기본권 차별

- 기본권은 주로, 미등록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 행태임. 여기에는 보육 및 의료 서비스, 가족 동반, 사회 보험, 정보 접근권, 이동의 자유 등이 포함됨.

**사례62)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비행기타면 4시간이나 5시간 걸린다.

그런데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간다. 6년 전에 엄마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다린다.’라고 했지만 나는 아직도 고향에 못 간다. 엄마의 얼굴을 6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후 한 번도 못 보았다.

아빠는 85세시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시다. 나는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고 한 번만 품에 안아 보고 싶다. 그러나 할 수 없다. 언니는 내게 “너는 거친 바다 위의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니깐 보고 싶어도 참으라.”고 했다.

나는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 그러나 미등록 사람이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즈영, 여, 베트남)



사례63) 의료보험 없는 것도,

자꾸 물어보는 것도, 모두 나를 힘들게 해요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왜 아기가 의료 보험 없냐?”고 계속 물어 보거든요. 내가 없다고 말하면, “의료보험이 없으면 너무 비싸요, 어떻게 할까요? 진료 할까요?” 질문이 이어집니다.

내가 “네, 일반적으로 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쫓쫓쫓 아이구” 안됐다는 표정을 짓지요. 간호사들도 다른 환자들도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 보구요.

나는 언제나 아기에게 진료를 받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니면 아기가 아플 때 그냥 집에서 문을 닫고 참게 해야 할까, 깊은 고민을 해야만 해요. 의료보험이 없는 것도, 내가 의료보험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해달라고 먼저 말하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묻고 또 물어보는 것도, 모두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건 자꾸 되묻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즈영, 여, 베트남)

○ 성희롱

- 사례가 많진 않으나 직장, 상점,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사적 공간 등 성희롱과 성적 차별이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됨.

**사례64) 패션, 내 취향이니, 쓰레기통 같은 입을 다무시지요!**

몸매가 글래머하고 통통한 편인 몽골 출신 이주 여성인 나모씨는 짧은 치마와 가슴골이 파인 옷을 자주 입는 편이다.

전자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일하는 여자들은 물론 남자들이 “남편은 좋겠다. 눈도 호강하고” 등 나모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을 하곤 했다. 담당 반장은 대놓고 나모씨의 신체를 만진 적도 있었다.

아직 한국말도 능숙하지 못하고 어렵게 구한 직장이라 그만 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 술자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힘든 부서로 옮겨졌다. 성적 괴롭힘은 사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계속된다.

퇴근길에 경유해야만 하는 노천카페의 중년 남성들은 나모씨가 지나갈 때면 “저 궁뎅이 봐라, 좋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인 성추행을 한다. 이런 상황은 남편과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진다.

나모씨는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든다. 한국에 온 외국 사람들은 다 이런 부당 대우를 받으며 생활을 해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만 하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은희, 여, 중국)

### 사례65) 사진사면 사진에만 집중하세요!

증명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동네 사진관을 갔다.

사장이 사진을 찍으며 사적인 질문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다. 내가 몽골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불필요한 질문을 덧붙였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자 집요하게 요구했다.

끝내는 전화번호를 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화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영뚱한 번호를 적어주었다. 그러자, 언제 전화를 하면 되는지, 남편이 없는 때는 언제인지를 물었다. 불쾌함이 치솟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냥 사진을 받아 뛰쳐나왔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그랬을까 싶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에게 하지 않을 무례한 언행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 인종차별이다. 너무 화가 나서 이를 지역의 인권단체에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내가 항의를 하기에는 겁이 났고, 증거가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미리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노밍게르, 여, 몽골)

○ 폭언 및 협박

- 직장, 대중교통, 근린, 사적 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 보고됨.

**사례66) 지금 돈 없어. 너희들이 자꾸 이러면 내가 경찰한테 신고해 버린다!**

미등록 외국인 남자 세 명이 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몇 달 동안 월급이 밀린 상태였다.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면 사장은 “다음 달에 한 번에 줄게”라고 말하곤 했다. 한국말을 잘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남자들은 몇 달을 참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다시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사장은 기존의 태도에서 돌변, “지금 돈 없어. 너희들이 자꾸 이러면 내가 경찰한테 신고해 버린다! 너희들 다 불법체류자니까 조용히 일하거나 해!”라고 위협했다.

미등록인 세 남성은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장의 말이 두려워 체불 상태에서 사장이 알아서 월급을 줄 때를 기다리며 일을 해야만 했다.

작은 방에 4명이 함께 생활했고, 가스가 떨어져 며칠 동안 생라면만 먹기도 했다.

(장서운, 여, 베트남)

### 사례67) 폭력 남편이 아이 양육의 능력자일 수 있을까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느이는 약 3년 동안 아이 문제로 남편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느이는 남편과 떨어져 딸과 함께 베트남에서 살고 싶었지만 느이의 남편은 “가고 싶으면 너만 혼자! 내 딸은 내가 키울 거야!”라며 냉정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느이가 처음 한국에 올 때부터 느이 남편은 외국인 아내를 무시하고 “외국인이 약자다. 능력이 없다.”라며 차별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남편들 가운데는 외국인 아내가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로 헤어지게 되면 “여자가 외국인이고, 애를 키울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들은 느이처럼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도 아이와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이 두려워 참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현지영, 여, 베트남)

○ 무고

- 무고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네이버 국어사전)을 뜻함.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인을 근거 없이 의심해서, 어떤 일탈 혹은 범죄 행위의 피의자로 의심하고 추궁하는 행위를 무고라는 범주로 분류함. 경찰의 부당한 의심과 검문 등이 포함됨.

**사례68) 아이고 한국에 외국인 있어 못살아**

페루사람 M씨 집 앞에 누군가 검은 봉지에 냄새 나는 고기를 버려놓고 갔다.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주인이 M씨한테 큰 소리로, “왜 이것 쓰레기(야채하고 한국음식) 음식쓰레기 이곳에 버렸어?” “외국인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래서 M씨가 주인에게 말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당신은 왜 묻지도 않고 나를 비난’하느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말했다.

“니가 안했으면 누가 이렇게 해? 이 집에 너만 외국인이잖아.”

다음날 주인은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한국에 외국인 있어 못살아”

(파올라, 여, 페루)

### 사례69) 하수구가 막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원인은 다 외국인 탓!

방글라데시 출신 R씨는 수원에 사는 학생으로 한국에 온 이후로 같은 아파트에서 약 6개월 정도 살았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의 이웃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있었는데 집주인은 하수구가 막힌 원인으로 그를 지목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에 따르면 그는 그 아파트에서 사는 유일한 외국인이며 그가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말했다.

(제임스, 남, 우간다)

### 사례70) 선생님, 간식 셔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흥분하시죠?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큰 아이를 학교 돌봄교실에 맡겼습니다. 어제 돌봄교실 선생님께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생활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방과 후 수업을 까먹고 돌봄 교실로 가야할 시간에 친구들과 놀았다고 합니다. 친구가 돈이 있어서 같이 간식도 사먹고 학교 앞에서 같이 놀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전화로 제게 “친구의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에게 다시 교육시키세요!”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전화해주신 것은 감사했지만,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불쾌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에게 물어보니 “친구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고 사줬어. 다음번에는 내가 사줘야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돌봄 교실에 갈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강사활동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안내를 드리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현지영, 여, 베트남)







# V. 시사점과 정책제언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 1. 요약과 시사점

- 수집된 185개의 사례를 차별 범주별로 분류한 결과, 외국인 신분에 따른 차별 83건,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58건,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차별 29건, 종교 등 타문화에 대한 차별 15건 등이었음.
  
- 차별이 이루어진 장소별로 차별 사례들을 재분류한 결과, 교육 시설(학교, 학원 등) 34건, 직장 31건, 상업시설(옷가게, 식당 등) 27건, 근린 26건, 제도 공간(주민센터, 법무부 등) 20건,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등) 18건, 사적 공간(가정 등) 18건, 병원 8건, 미디어 5건, 종교 및 엔지오 3건 등이었음
  
- 차별 행태별로 사례들을 재분류한 결과, 무시·비하·모욕·혐오 53건, 고정관념과 편견 32건, 기회와 처우에서의 불평등 24건, 따돌림과 분리 22건, 폭언·협박·폭행 18건, 거부 17건, 기본권 침해 8건, 부당한 의심 및 무고 8건, 성희롱 3건 등이었음: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인종차별이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여러 형태가 중첩되어 발생함을 확인함.
  -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차별: 총 29건에 달하는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차별 사례들에는, 교통수단에서의 따돌림,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의 따돌림, 무례한 언설, 모욕, 고용 기회에서의 차별, 사우나 및 상업 시설 출입 거부 등이 포함됨. 대부분의 피해자는 검거나 어두운 피부 톤을 가진 경우이나, 때로는 밝은 피부를 가진 경우도 차별 대상에 포함됨.
  
  -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은 총 58건으로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차별 다음으로 많이 관찰된 사례임. 차별 형태에는 출신국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모욕과 비하, 구직 기회 박탈, 처우의 불평등, 분리와 따돌림 등이 포함됨.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에는 드물지만 위의 사례에서처럼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차별도 포함됨. 일부 국가 출신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포함하는 성적 차별도 포함됨.

- 외국인 신분에 따른 차별: 외국인 신분에 따른 차별은 총 83건으로 이번 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사례임. 무시와 비하, 거부, 처우, (미등록일 경우) 기본권 박탈, 폭언, 따돌림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차별이 관찰됨. 특히 협박 및 이유 없는 신체적 폭행 등 직접적으로 인신의 위해를 겨냥하는 차별 행태들이 포함됨.
  - 종교 등 타문화에 따른 차별: 종교 등 타문화에 대한 차별은 총 15건으로 이번 모니터링 조사에서 가장 적게 관측된 범주임. 이슬람과 (한국과 다른) 음식 문화에 대한 차별이 주류이나, 의상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비하도 관찰됨.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185개의 인종차별 사례들은, 체류 외국인 200만의 시대에 진입한, “있을 법 하지 않은 일”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 10여년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성과들이, 허구적이거나 기만적인 것일 수도 있으리라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음.
- 직장은 물론이요, 상점, 학교, 공공시설, 대중교통, 근린, 종교 및 엔지오, 사적 공간 등 일상을 구성하는 전방위적인 공간에서 인종주의적인 차별이 관측됨
  - 외모, 경제력, 학력, 계층과 직업, 성 등 인종차별의 요인들은 국민 내부의 차별 요소들과 상당 부분 중첩됨. 한 가지 요소에서 촉발된 차별은 다른 요소/행태들로 중첩,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 교육 시설 및 공공 부문에서의 ‘제도적 인종주의’는 생각보다 심각했음. 노골적인 분리주의, 거부,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처우 및 기회에서의 불평등, 불공정한 법집행, 무고 등이 의외로 빈번함
  - 주류 사회의 기성세대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출신국과 특정 종교, 문화를 둘러싼 차별이 관측됨

- 차별의 심각성과 차별 주체의 다양성에 비해 차별을 시정하거나 저항할 법제나 시설의 부재하거나 부족함.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거부, 모욕, 불공정한 처우, 신체적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하고도 그냥 감내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응함
- 그러나 이번에 수집한 사례들만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인종 차별 실태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조사원으로 참여한 7개국 출신의 도내 6개 지역에서 생활하는 14명의 이주민 당사자 모니터링 요원들 가운데 인종주의에 대한 개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음. 그들은 훈련된 조사 전문가들은 아니었음.
  - 시간과 자원, 접근성의 한계로, 매우 중요하지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분야가 존재함. 외국인근로자, 특히 미등록 체류자들의 문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음.
  - 조사 툴(tool) 무엇보다도,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연구진이 개발한 조사지가, 막상 조사 결과들을 수집해 분석해보았을 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인종차별의 범주와 내용을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했음.
-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종차별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의 제정 및 정책 방안 마련,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의 긴급한 조치들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사회의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해결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공론의 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함

## 2. 정책제언

### ○ 관련 법제의 마련

- 인종차별은 개인과 구조, 생활세계와 제도 영역을 포괄하는 문제. 관련 입법과 법률 제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을 범죄화할 것과 형법을 개정해 인종주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 인종차별에 둔감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차별 행위는 관행과 문화, 공공 부문의 재량권의 이름으로 관용되며, 공론화조차 못하는 형편이므로, 관련 법률의 제정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행위를 규율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법적 조치의 마련과 관련된 쟁점은 두 가지로 구분됨. 첫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인가,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인가. 그리고 신법의 제정인가 차별행위 금지 규정이 포함된 개별 법률에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인가.
-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종차별금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법제정 이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므로 이런 점에서는 별도의 인종차별금지법 모색도 필요함. 그러나 인종차별이 '인종'만을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계, 연령, 젠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개별 법률의 제정으로 이러한 다중적인 차별을 규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함.

○ 유엔 개인진정제도의 활용

- 인종차별을 당한 개인들은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도 차별 시정과 권리 구제를 진정할 수 있음.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개인 진정 제도를 활용, 한국에서 활동 중인 원어민 영어 교사 한 사람이 원어민 영어교사에게 한국인 교사 및 재외동포(F-4) 사증을 보유한 한국계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HIV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2012년에 유엔인종차별위원회에 제기함.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5년 원어민 영어 교사에게만 HIV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인종 피부색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된다.”며 “원어민 영어 교사인 진정인이 겪은 고통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함.
- 유엔의 시정 요구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교사에게 에이즈 검사를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함.
- 인종차별을 특정하고 규율(처벌,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제가 부재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인종차별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위해 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정규적인 실태 파악의 필요성

-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권리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일은 정규적이며 정확한 실태 파악임.
- 유럽의 경우, 이러한 실태 파악은 정부 차원이 아니라 시민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최영미 2016).

-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연구진은 직장은 물론이요, 상점, 학교, 공공시설, 대중교통, 근린, 종교 및 엔지오, 사적 공간 등 일상을 구성하는 전방위적인 공간에서 인종주의적인 차별이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함.
- 특히 ‘제도적 인종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교육 시설 및 공공 부문에서의 노골적인 분리주의, 거부,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처우 및 기회에서의 불평등, 불공정한 법집행, 무고 등의 차별 행태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그러나 국내의 외국인 관련 정책의 초점은 ‘문화적 차이’ 혹은 ‘문화 다양성’에 주어져 있으므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차별이 ‘인종차별’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와 연관될 수 있다는 공공 부문의 문제의식 자체가 희박함.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인종차별 실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유되고, 그를 통해 개선 방안이 공론화 되는 일이 필요함.

#### ○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 법제의 부재와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중첩되는 경우,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됨.
-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종주의 반대 교육의 적극적 시행,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론장의 적극적 활용, 기존의 법 체제 내에서 차별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공적 수단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이 필요함.
- 독일의 경우 전독일 네트워크에서 인종주의 반대 교육을 진행함. 교육에는 저널 및 배지 제작, 캠페인 기획과 시행 등이 포함됨. 인종주의 반대 학교 교육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교재도 체계적으로 제작됨(최영미 2016).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공익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한국은 인종주의 기소건수가 0건인 한국에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은 불가능하나 직장에서의 인종차별의 경우 고용주 위법성으로 손해배상소송 청구는 가능함.
- 인종주의가 성희롱, 폭행 등 기타의 형사적인 범죄 행위와 동반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외국인 당사자들에게 ‘112’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구제 전화 번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 중앙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경기도나 지자체 차원에서 인종차별 예방과 구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과 시행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인종차별 관련 정책들을 모니터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력해야 할 일과 새로 시작해야 할 과제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
- 인종차별에 대한 실태 파악은 유럽의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시민사회와의 관계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서 유리한 지방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임.
-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의 내용을 지자체 차원의 조례에 포함시키거나, 그에 준거해 시행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도 필요함.
- 공적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한 행정 감독이나 행정 지도의 강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과 모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함.



- 지자체 차원에서 역내 공공 및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반인종주의 혹은 다  
양성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 반인종주의 문화를 조직 내  
확산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참고 문헌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 강진구. 2012. “한국사회 반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제32집.
-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이주민인권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 김용신. 2014. “한국 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 분석을 위한 개념과 지표의 구축”. 『국제지역연구』 18(1).
- 김현미. 2014. “인종주의 확산과 ‘국가없음’”. 『2014 한국 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
- 안상수 외. 2016.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경석·이경숙 외.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우충완·우형진. 2014.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7.
- 이연옥·박병현·장덕현. 201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국내 주요 일간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2).
- 이창수. 2015.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적 담화구조』. 집문당.

- 이희은·유경한·안지현. 2007. “TV광고에 나타난 전략적 다문화주의와 인종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8.
- 임재형·김재신. 2014.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에 관한 경험적 분석”. 『OUGHTOPIA』 29(1).
- 전기택 외.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연구·송현주·윤태일·심훈. 2011.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2).
- 조규범. 2012.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제451호.
- 최영미. 2016. “인종차별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국제 사회의 대응”. 『2016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정책 심포지엄 자료집-인종차별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최정규. 2016. “인종차별 예방과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 『2016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정책 심포지엄 자료집-인종차별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한희정. 2016.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016.2.

연합뉴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에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 2014.10.6.

한국경제TV. “3대 천왕 하니, 눈 뿜 수 없는 가녀린 팔 라인 + 한줌 개미허리 난민 바디”. 2016.1.29.

MBN 뉴스. “외국인근로자 IS 가담 ‘한국 출국 후 IS 가담, 더 이상 테러 안전지다 아냐’”. 2016.1.21.



# 인종차별 모니터지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 인종차별 모니터지

모니터 요원 이름		모니터 날짜	2016년 월 일(요일)
-----------	--	--------	---------------

(1) 내 용 :

(2) 이 유 :

대분류	소분류	기타
1. 피부색 등 외모 차별	① 백인 우월주의 조장	
	② 외모, 유색인 비하 및 희화화	
2. 출신국가 차별	① 선진국 우월주의 조장	
	② 지역 및 출신국에 대한 비하 및 희화화	
3. 외국인 신분 차별	① 외국인을 열등하게 표현	
	② 외국인을 무시, 비하, 혐오 조장	
4. 종교 등 타문화 차별	①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비하나 혐오 조장	
	② 타국의 전통에 대한 비하나 희화화	

※ 차별의 종류가 여러 유형에 해당할 경우,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대분류와 해당 소분류에 표시해 주세요. 그 밖에 다른 차별 이유는 기타에 적어주세요.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초지동, 4층)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전화. 031 492 9347 전승. 031 492 9349 누리집. [www.gmhr.or.kr](http://www.gmhr.or.kr)